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April 2006, VOL. 358

KIPA소식 · 특허청소식 · KIPA혁신활동
특허뉴스 · 특허계소식
논단

주지상표 보호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과제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기획특집

특허기술이전 마케팅
특허기술평가결과 활용사례
네오바이오다임(주)

국제특허분쟁지도 기획시리즈(미국편)
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보고서Ⅳ
임선하 창의교실(3)
창의성은 모두가 일등하는 것
발명칼럼

지식재산권의 힘은 막강하다
특허길라잡이
기술이전을 기다리는 우수한
특허기술이 한자리에
세계는 지금
물건 ‘속’ 사정을 꿰뚫다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발명아이디어 성공을 찾아서
신선한 생각을 보관하라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과정

www.ipmart.or.kr

KOREA PATENT FAIR

KPF 2006

대한민국특허기술이전박람회

2006 5 10(수) ~ 12(금)

COEX 인도양홀 9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특허기술 전시 및 부대행사

■ 무료입장, 참가기술 목록집 제공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전화 : 02-3459-2841~51 팩스 : 02-3459-2858

<http://www.ipmart.or.kr>



제41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요

INVENTION



1. 목 적

-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범국민적 발명분위기 확산
- 발명인의 사기양양과 발명의욕 고취를 통한 신지식인 사회 실현
- 우수발명의 창출과 신기술 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2. 일 시

2006년 5월 19일(금) 10:30 ~



3. 장 소

COEX 오디토리움



4. 주최/주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5. 행사내용

발명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 등 포상



6. 참석인사

주빈 및 정부관계자 등



7. 참석대상 및 범위

1,000 여 명 (발명계 등)

- 우수발명인, 우수발명기업(수상업체), 발명유관단체, 발명진흥관련기관 임직원 및 언론사 보도진(기자단) 등 기타

CONTENTS

April 2006, Vol. 358
Invention & Patent

KIPA소식	8
특허청소식	13
KIPA 혁신활동	22
특허뉴스	24
특허계소식	26
논단 권영수	
주지상표 보호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검토과제	28
논단 이제명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34
기획특집 김완목	
특허기술이전 마케팅	46
특허기술평가결과 활용사례 네오바이오다임(주)	54
국제특허분쟁지도 기획시리즈(미국편)	58
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보고서IV	64
임선하 창의교실(3) 임선하	
창의성은 모두가 일등하는 것	74
발명칼럼 남호현	
지식재산권의 힘은 막강하다	80
특허길라잡이 이두성	
기술이전을 기다리는 우수한 특허기술이 한자리에	86
세계는 지금 유지영	
물건 ‘속’ 사정을 꿰뚫다	88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92
발명아이디어 성공을 찾아서 왕연중	
신선한 생각을 보관하라	94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과정	98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발명이야기	
즐거운 퍼즐	



• 본지는한국도서관지윤리위원의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 본지에게재된기사와본회의견해와는다를수도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06년 4월호 제31권 제4호(통권358호)
발행인/편집인 | 이 구 택
인쇄인 | 이 평 원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35-980)
전 화 | 02)3459-2800(대)
인 쇄 | 2006년 4월 25일
발 행 | 2006년 4월 30일
인쇄처 | 휘문인쇄사 (02)2276-1234

www.ipacademy.net



IPAcademy

2006년 오프라인교육

지식재산권기초 -1차

특허기초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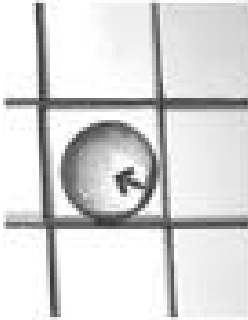
*기업 특허담당자를 위한 첫입문과정
지식재산권 기본적인 습득과 특허권자 필요성 알람

-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회당) : 온라인(2개 선수학습) + 오프라인(4일, 총25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4회
 - 1차 : 2006년 3월 8일(월) ~ 3월 15일(목)
 - 2차 : 2006년 3월 18일(토) ~ 3월 22일(수)
 - 3차 : 2006년 4월 22일(화) ~ 4월 28일(금)
 - 4차 : 2006년 5월 12일(목) ~ 5월 18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최장 4일(총 33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알뜰전문회 빌딩미디어교육실(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 온 라 인 선수학습 : 사이버상재특허아카데미 "지재권기초", "특허와실용성상권" (일련번호필) (www.ipacademy.net)
- 수 장 료(회당,1인당) : 우리회 회원사 350,000원 비회원사 : 400,000원
- 교 육 목 적
 - 최근 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제적 보호 동향 인식
 -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도 및 실무 전반에 대한 총론적 이해도 확립
- 교 육 대 상
 - 기업 및 무정형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소요원, 대학원 및 대학원생, 시험준비생, 기타 관계자
- 교 육 인 원 : 회당 49명
- 교 육 형 태 : 비합숙
-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유치를 80% 이상 (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교 육 내 용

구분	교육내용 (회당)	소요시간
1일	09:30~10:00 좌절 연세 및 C/P 교육생 발표인사, 입장소개	
	10:00~12:00 특허법과 실용성입법	3
	14:00~17:00 특허정보포럼	3
2일	10:00~12:00 상요원	3
	14:00~18:00 산업재산권 총론, 인자 및 출원서 작성요령 (특허 출원, PCT국제출원, 상표국제출원 과정)	4
3일	10:00~12:00 부정행위방지법 및 기밀과 영업비밀 보호제도	3
	14:00~17:00 기업적 자주명명 제도	3
4일	10:00~12:00 특허법적지, 특허요령과 청구항의 작성 (10:00~12:00 출원서작성)	4
	14:00~17:00 기업-경영자-특허권 관련 연차	3
	17:00~17:30 강의 당경과 연차 소개	

* 교육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ipacademy.net



IP Academy

2006년 오프라인교육

실전!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특허 향상코스

기업 특허업무수행자가 특허침해, 불합법무수행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 판단과정"

- 문·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회합) : 해당 없음.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6년 4월 31일(수) ~ 4월 2일(금)
- 오프라인 교육기간 : 2일(총 20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입체미디어교육장(한국저작권위원회 18층)
- 수 록 료(회당,1인당) : 우리회 회원사 320,000원 비회원사 : 370,000원

교육 목적

- 특허침해 판단시 기본이 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 습득
- 기술 문서상 침해 사례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의 적용까지 충분히 이해 도모

교육 대상

- 기업 및 과업연구소, 특허관련자부스 등 특허 실무담당 20명 이상인 자

교육 인원

회당 40명

교육 형태

비합숙

수료 기준

오프라인 교육출석률 80% 이상 (온라인 소수학습은 수료기준 미보함)

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회당)	소요시간
1일	09:30~10:30 과업 분야별 특허 (교육생 상호인사, 등록사항)	3
	10:30~11:00 한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론	
	11:00~11:30 미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최근 경향	
2일	10:30~11:00 청구범위 이해(상상가능한범위, 발 문용의해)	4
	11:00~11:30 청구범위 이해(상상가능한범위, 발 문용의해)	
3일	10:30~11:00 청구범위 이해(상상가능한범위, 발 문용의해, 원리 및 공리법)	3
	11:00~11:30 청구범위 이해(상상가능한범위 또는 대응기술의 설명 등 설명방법)	

* 교육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ipacademy.net



IPAcademy

2008년 오프라인교육

특허명세서작성 및 보정서 작성

특허 향상코스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 및 국내외 특허법령, 관세청합을 고려하여
등록가능하여 최대한의 관세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스킬을 훈련하는 과정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최당) : 온라인(2회) + 오프라인(2일, 총 24시간)

오프라인 교육일정 : 2회

- 1회 : 2008년 5월 22일(월) ~ 23일 (총 2일)
- 2회 : 2008년 5월 29일(월) ~ 30일 (총 2일)

오프라인 교육기간 : 2일(총 24시간)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법률진흥회 법학사(서울과학기술대(한국과학기술원) 2층)

온 라 인 선수학습 : 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법령”, “특허명세서작성(2)-특정기술관련”
(일반인과정)(www.ipacademy.net)

수강료(최당, 1인당) : 우리회 회원사 250,000원 비회원사 : 400,000원

교육 목적

-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특허에 대한 개인적
-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특허 출원절차에 대한 권리변화를 처리하는 법에서 특성

교육 대상

- 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소원

교육 인원 : 최당 48명

교육 형태 : 비합중

수료 기준 : 온라인 교육수업을 80% 이상 (온라인 선수학습은 수료기준 제외됨)

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1인당)	시간
1회	09:00~10:00 과당 운영 및 오리엔테이션(법률, 정책, 기술)	1
	10:00~11:00 특허법령에 대한	1
	11:00~12:00 특허법령에 대한	1
	12:00~13:00 특허법령에 대한	1
	13:00~14:00 특허법령에 대한	1
2회	14:00~15:00 특허법령에 대한	1
	15:00~16:00 특허법령에 대한	1
3회	16:00~17:00 특허법령에 대한	1
	17:00~18:00 특허법령에 대한	1
4회	18:00~19:00 특허법령에 대한	1
	19:00~20:00 특허법령에 대한	1
5회	20:00~21:00 특허법령에 대한	1
	21:00~22:00 특허법령에 대한	1

* 교육비와 교육료는 별도입니다.

2006 제네바 발명전 우리나라 13개 수상

금상 6점, 은상 4점, 특별상 3점 등



우 리나라발명가들이지난4월5일부터9일까지스위스제네바팔렉스포(PALEXPO)에서개최된제34회 제네바국제발명·신기술및 신제품전시회에서금상6점, 은상4점, 특별상3점 등 총 13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금상수상작은모나스펌프(대표이만수)의 ‘플렉시블트랜스미션샤프트,’엠아이티기업(대표박인구)의 ‘좌변기용위생시트커버조립체,’비엔알맥스(대표김경란)의 ‘경혈지압장치 웰바스(대표이근진)의 ‘냉각시스템을장착한바비큐그릴,’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대표세엽)의 ‘필터일체형방독마스크,’미스터장미용

그룹(대표장용석)의 ‘가발의착탈구조’ 등이다.

특히이 가운데모나스펌프와비엔알맥스, 웰바스출품작은각발명가들이추천한 우수발명품특별상도동시에수상했다. 또 은상에는길민(대표윤민호)의 골프연습장용타겟, LG생활건강(대표차석용)의 ‘화장품용기,’김성일(개인)의 손목단련용 운동구,’미스터장미용그룹의 석고퍼머하는방법 등이수상했다.

세계최고의권위라고할수 있는제네바국제발명전은올해가34회째로프랑스·스페인·러시아·이란등총8개국에서1천여 점의발명신기술제품이전시됐다.



2006 제네바 국제발명 ·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수상자 명단

수상현황	권리자명	단체명 [대표명]	권리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금상, 대만발명가 협회 특별상	김경란	(주)비엔알맥스 [김경란]	특출 2005-14899	경혈지압 장치
금상, 러시아하우스 특별상	모나스펌프(주)	모나스펌프(주) [이만수]	특허 제0541769호	플렉시블 트랜스미션 샤프트
금상 말레이시아 발명및디자인 협회 특별상	(주)웰바스	(주)웰바스 [이근진]	특출 2005-13804	냉각 시스템을 장착한 바비큐 그릴
금상	박인구	엠아이티기업 (주)[박인구]	특출 2003-93456	좌변기용 위생시트 커버 조립체
금상	(주)한국원자력 엔지니어링	(주)한국원자력 엔지니어링 [이세엽]	특출 2006-4340	필터 일체형 방독 마스크
금상	장용석	미스터장 미용 그룹 원장	실용 제0373102호	가발의 착탈구조
은상	장용석	미스터장 미용 그룹 원장	특허 제0479357호	석고 퍼머를 하는 방법
은상	윤민호	길민(주) [윤민호]	특출 2006-14713	골프연습장용 타겟
은상	(주)LG생활 건강	(주)LG생활 건강 [차석용]	특출 2006-17305	화장품 용기
은상	김성일		특출 2006-11476	손목 단련용 운동구

일본발명협회,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일본무역진흥기구 대표단 우리회 방문



1

한 국의특허개발정책및 특허라이센싱 서비스관련사업의정보교환을목적으로일본발명협회(JIPPI)와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CPI), 그리고일본무역진흥기구(JETRO)한국지부가지난4월1일우리회를방문하였다.

이집중사업본부장은우리회의간략한소개와 전반적인사업설명을하였으며, 일본대표단은지역지식재산센터확성화및 어드바이저운영에관심을보였다.

특히일본발명협회Osamu Ueno 상무이사는협회소개및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

관(NCPI)을 차례로소개한후, 특허개발정책의필요성및 운영, 그리고특허라이센싱 서비스의활용및 결과예해설명하였다.

앞으로도우리회와일본발명협회및 이하기관들은보다긴밀한협력을다질전망이다.



2

1. 우리회박상원상근부회장과일본발명협회 이하기관들이업무협의를하고있다.
2. 일본발명협회Osamu Ueno 상무이사기사업설명을하고있다.

중국길림 연변조선족자치주발명협회 대표단 우리회 방문



우리회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서울국제발명전시회및 국내유관기관(업체)과의업무협의를위해중국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발명협회대표단이지난4월 12일 우리회를방문하였다.

이번방문을통하여우리회와중국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발명협회는2006 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와서울국제발명전시회연계사업에대해협의를하였으며, 앞으로도협력관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연변대표단은기술이전및사업화에필요한 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특허기술상설장

터(한국지식재산센터층)를관람하는시간도가졌다.



1. 왼쪽부터우리회신경호계장·정익수위원장·박상원상근부회장연변발명협회재길이사·김봉학원
2. 우리회박상원상근부회장과중국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발명협회대표단업무협의를하고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우리의 다짐(한국발명진흥회 CS12) 선포

고객 행복 서비스 실현의 초석



우 리회는2006년도전략목표중 하나인「고객행복서비스실현의초석」으로 지난3월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9층 국제회의실에서고객만족을위한우리의 다짐(한국발명진흥회CS12 : Customer Satisfaction)을선포하였다.

직원공모를통해응모된84개의제안건을 2차에걸쳐심사하고최종선별한CS12는 앞으로우리회의고객행복서비스실현을위한밑거름이될전망이다.

고객만족을위한우리의다짐은다음과 같다.

▣ 고객만족을위한우리의다짐

- 발명은21세기의새로운경영자산이다
- 성과중심혁신경영고객만족사업추진
- 더할것은업무혁신지킬것은고객만족
- 우리가고객에게정성을주면, 고객은우리에게 믿음을준다
- 투명한행정, 열린서비스, 신바람나는일터
- 당신의미소는고객의얼굴이다
- 살펴보고찾아보고고민하고개선하고
- 고객3S(Smile, Speed, Satisfaction) 운동을 생활화하자
- 나로부터의변화가팀을살린다
- 반박자빠른업무처리, 한박자빠른고객만족
- 고객과눈높이를맞춰라
- 고객앞에서규정을들먹이지말라

실용신안, 권리강화를 위하여 거듭나다!

특허청은권리의안정적보호및 국제 제도와의회조화를위하여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개정을추진한결과, 그시행 을눈앞에두고있다고밝혔다.

이번개정 특허법· 실용신안법에함 된주요내용은

- 특허출원과실용신안기술평가에대 한 심사처리기간약이가없어짐에 따라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심사후 등록제도로전환하고,
- 특허분쟁을조기에해결할수있도록 하기위하여유사한기능을지고있 는이의신청제도와무효심판제도를 통합하며,
- 출원인이자발적으로기술을공개하 는 경우에는어떤방식으로공개를 했느냐에상관없이공개후 6 개월이내에출원을하면특 허를받을수있도록하는내 용등이포함되어있다.

그 외에도이번개정법에는민 원인의편의를높이기위하여, 토요일도공휴일에포함시 켜 토요일이제출서 류의마감일인경우 월요일까지서류제출 일을 연장해주도록하 고, 외국에서간행물외 의 방법으로알려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받지못하도록하며, 미공개상태로 거절결정이확정된출원을특허받을수 있 는 정도로보완하여다시출원하면특허를 받을수있도록하는등예도개선사항이 함께포함되어있다.

한편, 특허청은이번개정법의주요개정 사항들은 06년 10월 1일 전면적으로시행 되나, 토요일이공휴일에포함되도록하는 등의민원인편의증진을위해도입되는개 정사항들에대해서는시행시기를최대한 앞당기기위해법률공포일인 2월에시행 된다고하였다.





5월 1일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최초의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는오는 5월 1일에 맞추어 고객비용부담완화와 편의증진을위해연차등록료와진체계를 일부하향조정하고특허우선심사신청시 청구항에따른가산료를폐지하는한편, 휴대용특허(등록)증발급, 수수료감면입증절차및 연차등록료납부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한다.

지금까지연차등록료가급격한누진체계로되어있어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장기적으로보유하는특허권자등에게막대한부담이되어왔으나, 이번개정에서는특허료의 경우현행3만 위로2배씩증가하던연차등록료누진체계를일부완화하여3년차이상기본료를36만원으로, 10년차이상청구항에따른가산료를5만5천으로동일하게적용하고, 7~9년차의 가산료를4만3천원에서4만원으로인하하며, 실용신안및디자인의 경우3년차이상등록료를일부인하한다.

또한특허우선심사신청시에특허청구시와같이 청구항에따른가산료를납부하도록되어있던것을이번개정에서는이

를 폐지하고정액16만 7천원만납부함으로써우선심사신청을할 수 있게된다.

※ 우선심사제도 i)출원공개후특허출원인이아닌자가업으로서특허출원발명을 실시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ii)대통령령이정하는특허출원으로서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다른특허출원에우선하여 심사하게할수있는제도로써, 심사청구순위에 의한심사원칙에대한예외로특정출원에대하여는우선적심사로조기권리화하여공공의이익및출원중인발명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임

그리고분할·합병에따른출원인변경 신고료및 특허권등의이전등록료인하대상을 「상법외 규정에따른회사에서모든법인으로확대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수행하고공동으로특허(실용신안)출원하는경우출원료·심사청구료의 50%를 감면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아울러이번개정에서는특허권자및출원인의편의를위하여특허(등록)증의종류에휴대가간편한수첩형태의휴대용특허(등록)증을추가하고수수료감면입증서류¹⁾의 제출을생략하였으며, 별도로납부서류없이연차특허(등록)료납입고지서로연차특허(등록)료를납부할수있도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록하였다(※동개정내용은06. 7. 1부터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일부 하향 조정	[별표 1]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table><thead><tr><th>특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th><th>금 액</th></tr></thead><tbody><tr><td>제1년 내지 제3년</td><td>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4년 내지 제6년</td><td>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 5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7년 내지 제9년</td><td>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 만3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0년 내지 제12년</td><td>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3년 내지 제15년</td><td>매년 48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6 만8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6년 내지 제18년</td><td>매년 9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8 만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9년 내지 제21년</td><td>매년 19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9 만5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22년 내지 제25년</td><td>매년 38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2만원을가산한금액</td></tr></tbody></table>	특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 5천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 만3천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48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6 만8천원을가산한금액	제16년 내지 제18년	매년 9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8 만원을가산한금액	제19년 내지 제21년	매년 19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9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제22년 내지 제25년	매년 38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2만원을가산한금액	[별표 1]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table><thead><tr><th>특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th><th>금 액</th></tr></thead><tbody><tr><td>제1년 내지 제3년</td><td>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4년 내지 제6년</td><td>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 5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7년 내지 제9년</td><td>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 만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0년 내지 제12년</td><td>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3년 내지 제25년</td><td>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td></tr></tbody></table>	특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 5천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 만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25년	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특허 연차 등록료
	특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 5천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 만3천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48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6 만8천원을가산한금액																															
	제16년 내지 제18년	매년 9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8 만원을가산한금액																															
	제19년 내지 제21년	매년 19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9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제22년 내지 제25년	매년 38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2만원을가산한금액																															
특허권설정등록 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 5천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 만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25년	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관련) <table><thead><tr><th>실용신안권설정 등록일부부터의 연수</th><th>금 액</th></tr></thead><tbody><tr><td>제1년 내지 제3년</td><td>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 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4년 내지 제6년</td><td>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 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7년 내지 제9년</td><td>매년 8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1만5 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0년 내지 제12년</td><td>매년 16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2만 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3년 내지 제15년</td><td>매년 3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 만5천원을가산한금액</td></tr></tbody></table>	실용신안권설정 등록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 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 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8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1만5 천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6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2만 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3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별표 2] 실용신안등록료(제3조제2항제1호관련) <table><thead><tr><th>실용신안권설정 등록일부부터의 연수</th><th>금 액</th></tr></thead><tbody><tr><td>제1년 내지 제3년</td><td>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 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4년 내지 제6년</td><td>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 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7년 내지 제9년</td><td>매년 8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1만5 천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0년 내지 제12년</td><td>매년 16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2만 원을가산한금액</td></tr><tr><td>제13년 내지 제15년</td><td>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 만원을가산한금액</td></tr></tbody></table>	실용신안권설정 등록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 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 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8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1만5 천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6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2만 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 만원을가산한금액	실용신안 연차 등록료						
실용신안권설정 등록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 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 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8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1만5 천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6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2만 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3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 만5천원을가산한금액																																
실용신안권설정 등록일부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 원을가산한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 원을가산한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8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1만5 천원을가산한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6만원에청구범위의1항마다2만 원을가산한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 만원을가산한금액																																

특허청 소식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별표 3)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table><tr><th rowspan="2">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러의 연수</th><th colspan="2">금 액</th></tr><tr><th>디자인심사 등록출원</th><th>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th></tr><tr><td>제1년 내지 제3년</td><td>매년 2만5천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td></tr><tr><td>제4년 내지 제6년</td><td>매년 3만5천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td></tr><tr><td>제7년 내지 제9년</td><td>매년 7만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td></tr><tr><td>제10년 내지 제12년</td><td>매년 14만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td></tr><tr><td>제13년 내지 제15년</td><td>매년 28만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28만원</td></tr></table>		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러의 연수	금 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8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28만원	(별표 3) 디자인등록료(제4조제2항제1호관련) <table><tr><th rowspan="2">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러의 연수</th><th colspan="2">금 액</th></tr><tr><th>디자인심사 등록출원</th><th>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th></tr><tr><td>제1년 내지 제3년</td><td>매년 2만5천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td></tr><tr><td>제4년 내지 제6년</td><td>매년 3만5천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td></tr><tr><td>제7년 내지 제9년</td><td>매년 7만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td></tr><tr><td>제10년 내지 제12년</td><td>매년 14만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td></tr><tr><td>제13년 내지 제15년</td><td>매년 21만원</td><td>1디자인마다 매년 21만원</td></tr></table>		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러의 연수	금 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1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21만원	디자인 연차 등록료
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러의 연수	금 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8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28만원																																											
디자인권설정등록 일부러의 연수	금 액																																												
	디자인심사 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2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2만5천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3만5천원	1디자인마다 매년 3만5천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7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7만원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4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14만원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1만원	1디자인마다 매년 21만원																																											
특허우선 심사신청료 체계 조정	○기본료(135,000원) + 항가산료 (32,000원/항)		○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167,000원) ※ 현행 기준으로 청구항이 1항인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 수준(135,000+32,000) 으로 신청인의 추가부담이 없음																																										
출원인변경 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 인하대상 확대	○법인 및 단체의 분할·합병에 따른 출 원인변경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 등록료 인하대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로 한정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 인하대상 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 권리이전등록료 - 특허 : 매건 5만3천원 → 1만4천원 - 실용 : 매건 4만원 → 1만4천원 - 디자인 : 매건 4만원 → 1만4천원 - 상표 : 매건 11만3천원 → 1만4천원 ※ 실시권(사용권)·질권의 이전등록료 - 매건 4만3천원 → 1만4천원 ※ 출원인변경신고료 - 매건 1만3천원 → 6천5백원																																										
휴대용 특허(등록)증 추가	<신 설>		○신청에 의해 교부되는 특허(등록)증의 종류에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휴 대용 특허(등록)증을 추가하고 교부신 청료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의 간소화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행정정보 공유망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감면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중소 기업 공동 출원·심사 청구시 수수료 감면	<신설>	○대·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특허(실용신 안 포함) 출원 및 심사청구시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50% 감면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의 일환
연차특허 (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시 별도의 납부 서를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 호를 부여받은 날 다음 날까지 납부	○특허청장이 연차특허(등록)료 납입고지 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 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내에 연차특허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 추가	‘06. 7. 1 시행
직무발명의 근거규정 변경	○정수규칙상에 직무발명의 근거규정이 특허법으로 규정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특허법에서 규 정하던 직무발명 관련규정이 발명진흥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수규칙상에 직무발명의 근거규정을 발명진흥법으 로 변경	발명진흥법 개정사항 반영, ‘06. 9. 4 시행
PCT 국제출원 관련 우선권서류 송달료 삭제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 1만원	<삭제> ※ WIPO와 특허청간의 전자적 서류교환 (PCT-EDI)의 시행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우선권서류도 전자적으로 WIPO에 송달됨 에 따른 송달료 삭제	

특허청 소식

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의 효력이 종래의 민법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조정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등록된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정식의 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지난 5년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종래 분쟁에 관하여 조정 성립되더라도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만 이인

정되어, 당사자 한쪽이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조정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이번 2006.2.9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등한 수준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서면에 의한 조정권고서를 송부하는 대신에 초기 단계부터 조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청제도 변경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심사서비스」 대리인사무소까지 확대

특허청에서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를 대리인사무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심사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주로 출원인만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등을 활용하여 심사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직접 대리인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를 통해 대리인들은 대전 특허청

까지 오지 않더라도 본인의 사무소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만나 특허심사와 관련한 불만 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고, 특허청은 특허심사와 관련한 개선 노력을 대리인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어서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전기전자기술 분야에 대하여 먼저 시범 실시한 후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리인사무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객의 고충을 안방에서 해결

찾아가는 고충해결 서비스 개시

“ 고 객이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감동
하도록 하라!”

특허청은 금년 4월부터 『특허고객고충
해결안방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특허고객고충해결안방서비스』는 좋은 발명을 하고서도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발명가나 기업체에 특허청 직원 이직접 방문하여 안내해주는 한편, 특허제도에 대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는 발명가들에게 특허 절차를 안내해주기 위하여 약 60명 규모의 인력으로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고객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과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고객, 즉 “찾아오는 고객” 위주의 고충해결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집에 있는 고객을 찾아가서 고충을 해결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특허청이 금년 5월 1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인 고객만족경영(CSM: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의 일환으로 착수하게 된 것으로, 금년 4월에 개시하여 향후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을 추진 중인 전 상무

특허청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특허고객고충해결안방서비스]

방문대상고객

- 특허청과의 전화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나, 아직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고객(발명가나 기업체 등)
- 전화를 통하여 특허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

방문장소 및 일시

- 사전에 고객과 상의하여 고객이 편리한 일시 및 장소를 결정(방문 장소는 고객의 주거지, 영업소 또는 인근 제3의 장소 중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

방문결과와 처리

- 방문·설명받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에 전화를 통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함
- 제도 개선의견을 제시한 고객에게는 조치결과에 대한 안내서신을 발송함

특허청 소식

“지재권 영문 e-러닝과정”대학생들에게 인기몰이

학점인정 및 국제기구 Summer School 참가 기회 제공

UN 산하 국제기구인 WIPO(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지재권 영문 e-러닝 과정이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허청은 지재권 영문 e-러닝 과정을 올해 1학기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부산대, 부경대학교에서 39명이 참가하여 학점 인정 용교과목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부산대 등 3개 대학 350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특히 본 과정을 최우수 교수료한 학생들 중 선발된 소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년 개최되는 WIPO 여름 학교(WIPO Summer School)에 한국 대표 학생으로 참가하여 최고 수준의 지재권 교육을 세계 각국의 인재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과정 이수자에게는 WIPO와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WIPO 사무총장,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이수료증이 발급되어, 대학생들이 UN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과정은 WIPO 국제교육원(WWA: WIPO Worldwide Academy)에서 제공하는 ‘DL-101’이라는 영문 지재권 과정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KL-101’이라는 지재권 e-러닝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함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 특허 변호사, 변리사, 특허경영벤처 CEO 등의 오프라인 수업이 결합된 블랜디드 러닝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은 본 과정을 발명진흥회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와 학술협정을 맺고 있는 21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재권 지식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PCT, 국내단계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

30개월에서 31개월로 1개월 연장

우 리나라에서특허를 받고자 하는 PCT 국제출원의출원인은이제까지는우선일로부터30개월이내에국제특허출원의번역문제출처를밝게되어있었으나, 2006년3월 3일 이후에는우선일로부터31개월까지로연장되어지정관청으로서의한국특허청에대한안정적인국내단계진입기간을확보하게되었다.

그 동안에는PCT 국제출원의국내단계진입기간이우선일로부터30개월로되어 있어, 외국에게주하는출원인은우선일로부터28개월에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받아 보고, 2개월이내에한국의대리인을선임하여번역문을작성, 제출하도록되어 있었다.

그러나특허청은30개월의기간내에출원인이모든절차를진행하기에는시간상촉박한점이 있음을감안하여2006년 3월 3일 이후에는(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이 2006년 3월 3일 이후인국제출원에한함) 출원인이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받아 보고, 3개월의여유있는기간 동안에한국에서특허획득 가능성및 발명의사업성등을 검토할 수있도록 관련 법령을개정하였는

바, 향후해외출원인편의가증대될것으로 기대된다.

※특 허 협 력 조 약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해외출원절차의통일화에관한국제조약으로1978년 1월 24일 발효되어, 현재128개국이가입되어있음.

우리나라는1984년 5월 10일 동 조약에 가입하여3개월후인8월 10일부터 국제출원업무를개시함.

PCT 국제출원절차는수리관청의국제출원접수, 국제조사기관에행기술조사,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특허성여부에관한예비적판단및 지정관청에서의특허허여여부결정단계로대별됨.



KIPA 혁신활동

우리회 주요혁신과제 추진성과 1.

고객을 위한 서비스「고객애로상담센터」운영

이 번 호에는우리회주요혁신과제추진성과중첫 번째로고객중심의발명진흥서비스 구현을위한「고객애로상담센터(여성도우미센탈) 소개하고자한다.

지난해6월부터운영중인고객애로상담센터는고객이최우선이라는자세를가지고우리회방문고객에게각종민원상담및발명진흥사업안내하고있다.

또한고객의요구(제안) 사항을충족하기위해「고객의소리함」을 운영하고있으며,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2층에본발명인의심터클마련하여발명가들의의견수렴공간으로활용하고있다.

앞으로도우리회는 고객을위한우리의다짐(CS 12) 제정 등각종고객만족행정정책을 마련하여한걸음더 고객의입장에서바라보고고객이원하는서비스를발굴하여고객만족경영을실천해나갈계획이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설명회 개최

우 리회는 지난 3월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 제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회 박상원 상근 부회장과 유창훈 관리본부장, 그리고 집중사업본부장을 비롯, 각 팀장 및 팀원이 참석하여 우리회의 비전과 전략 목표 공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로드맵, 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회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한 통합성과관리 매뉴얼을 발간함으로써 우리회 임직원 이동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사·팀·개인별 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평가·보상 체계를 수립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한 단계씩 밟아 나갈 계획이다.



특허 뉴스

신세대 인터넷 용어도 상표 출원

“짱” 결합상표 최고 인기

특 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대, 20대들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장하면서 신세대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출원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신세대 용어의 대표격인 ‘짱’(최고, 으뜸)은 단독 또는 도형 및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총 644건(2006년 2월 말 현재)이 출원되었는데, 이 중 2000년 이전에 총 103건, 2000년 이후 총 541건이 출원되어 청소년들의 유행어로 자리잡은 이후 출원 건수가 급증했으니 나타나

났다. 이외에 신세대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를 단독 또는 결합상표로 출원한 것으로는 “강추(강력 추천)”, “므훗(흐뭇한 표정)”, “뽀뿌(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 “샤방(눈에 띄게 예쁘고 화려해서 반짝 거린다는 뜻의 외태어)”, “추카(축하할 소리나 는 대로 쓴 것)”, “졸라, 존나(매우)”, “원췌(want you, 추천하다)”, “열공(열심히 공부하다)”, “페인(드라마, 영화, 만화 등 정미 콘텐츠에 몰두해 있는 사람)”, “꾸벅(인사하는 모양)”, “불끈(큰 것이 우뚝 치밀거나 치솟거나 떠오르는 모양, 주먹을 야무지게 쥐는 모양)”, “즐(즐거움, 즐겁게), 방가(반갑다)”, 하이루(영어 Hi를 뜻하며 인터넷 상에서 인사할 때 쓰는 말)”, “엑스박스(준말은 엑박으로 인터넷 상에 이미지가 나타나 오거나 그림이나 동영상의 링크가 잘못 걸렸을 때 ‘X’ 표시와

함께 뜨는 작은 상자 틀 뜻하는 말)”, “초딩, 중딩, 고딩, 대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병개(채팅 상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만나는 것)”, “OTL(사람이 좌절하여 털썩 엎어져 있는 모양)”, “찌질이(남의 취미 따위를 욕하고 절망시키는 사람)”, “놀라거나 황당할 때 쓰는 말)”, “븀업(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븀’이라는 유머 사이트에서 으뜸이라는 뜻으로 사용, 반대말은 븀다운) 등이 있다.

신세대 인터넷 유행어를 상표로 출원하는 이유는 최근 급속한 핵가족화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10대, 20대들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등장하게 되자, 젊은 신세대에게 친숙한 상표로 상품의 구매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네이밍 전략으로 보인다. 고특허청이 제명상표 3심사팀장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대 유행어 중 비속어는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현행 법상 등록되기 어렵고, “짱”의 경우 처럼 상품의 품질 표시를 나타내면서 일반인한테도 널리 알려져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세대 유행어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유행어만을 표장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출원하거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 출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특허청 정진대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은 조언한다.

대학 강의실에도 특허 열풍!!

서울대, KAIST 등 16개 대학에서 특허 교과목 개설

국 내 대기업들이특허경영을선포하고, 특허전담최고책임자인CPO가 신설되는등 기업에서특허경영바람이불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대학 강의실에서 “특허열풍”이 불고있다.

특허청에따르면2006년 1학기에서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등 전국 16개 이공계대학에서특허 관련 정규 교과목이 신규로개설되었다고밝혔다.

이번에개설되는특허교과목은기업이나 연구소현장에서필요하는특허정보검색, 특허정보분석등 실무교육위주로 편성되어, 향후이 강의들을들은대학생들이연구소나기업의연구현장에투입될경우크게도움이 될것이라고특허청관계자는전했다.

그동안대학에서의특허교육은법과대학에서특허법등 법률이론중심으로이루어져기업및관련기관에서특허업무를수행하는데한계가있었으며, 실제특허교육이절실히필요한이공계대학생을위한교육과정은거의전무한실정이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예비 연구인력이라할수 있는이공계대학생들을위한특허교육이 필요하다는판단하에, 주요대학과 협의하여특허교과목을개설하게되었다고추진배경을밝혔다.

교과목개설 대학중 서울대와KAIST에

서는대학원생을위한특허정보분석실무 과정이개설되며, 대학원생들에게접자신의 연구분야에대한 특허정보검색, 특허정보분석 등의 프로젝트를수행하게된다.

또한, 연세대와고려대에서는이공계대학생들이졸업이전에반드시들어야하는핵심교양과목으로개설되며, 이공계대학생들의특허마인드를제고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특허청에서는대학내 부족한특허교육여건을감안하여이번에교과목이개설된대학에특허전문가를통한강의를지원하고, 관련교재를개발하여제공하는등 교과목개설대학을적극지원해주고있다.

특허청은올 2학기에는교과목개설을전국 대학으로확대할예정이며, 이를위해 대학이원할경우특허 전문가파견등도적극지원 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제공 특허청



특 허청(청장전상우)이주최하고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한미영)가주관하는 ‘2006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가 지난4월 19일부터 22일까지4일간코엑스태평양홀에서개최되었다.

이번박람회개최목적은여성발명품의판로개척을돕고브랜드인지도제고및 사업화를지원하며 국내·외여성들의발명기술및 정보교류의기회를확대하기위한것으로지난2005년부터는한국여성발명협회가단독으로진행하고있다. 특히이번박람회는개최공지후 문의가꽤도하고일주일 만에전 부스신청이마감되는등 여성발명가들의 관심이집중되어있음이입증되기도했다.

첫날열린개막식에는최홍건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상우특허청장, 김창순여성가족부차관, 유승희국회의원, 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안광구대한변리사회회장, 박성득전자신문사장 등이참석한가운데박람회개막을알리는점등식점화를시작으로, 전시장엄청난한아이디어로 눈길을끄는여성발명품들을둘러보는시간을가졌다.

이번박람회에는국내의80여개 여성발명관련업체와일본·태국·필리핀등아시아지역여성들의 발명품들이한자리에서선보였으며식품·건강용품관, 미용·패션잡화관, 생활용품관, 가구·건

사진설명: 2006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막식에참석한내빈들의모습. 전길자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원장, 안광구대한변리사회회장, 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전상우특허청장, 최홍건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순여성가족부차관, 박성득전자신문사사장, 박상원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파타시나와트라태국중소기업청국장(왼쪽부터)

‘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 성대하게 개최

설장비관, 선물용품관, 해외(아시아권)으로나
뛰어우수발명품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 고온의스티밍 청소기(주)한경희스팀청
소)’ ; ‘ 발아현미고추장(수원여대 · 강남농산)’
‘ 쌀저온저장고 및 현미도정기(주)한국라이스
텍)’ ; ‘ 초소형음이온공기청정기(주)에어비타)’
‘ 슯침대 · 의자 · 식기 등 슯 관련 생활용품(주)아
이에스디지털)’ 등 일상속의 아이디어제품뿐만
아니라 웰빙 시대에맞춘 건강용품 및 기술력을
자랑하는 발명품까지 눈에 띄는 발명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또한 박람회 첫날 부대행사로 열린 ‘ 제2회 여
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에서는 여성발명가 5인
의 발명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제품 개발, 그리

고 사업화로 성공하게 된 사례 전반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뜻깊은 자리를 마
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천연비누만들기, 염색시연 등 관람
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고,
마술쇼 · 라틴댄스 · 퓨잔물놀이 등 다양한 부
대행사가 진행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 국내 여성
발명가들의 발명품을 한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동박람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
의 관심을 끌고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 이와같은 박람회를 통해 여성발명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
다” 라고 전했다.



제공 (사)한국여성발명협회

발 · 특 2006. 4

논 단

주지상표보호에관한법률적쟁점과검토과제

I. 문제의 제기

상표법과부정경쟁방지법은각주지상표(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상표는상표법상의주지상표와저명상표를포함하는것으로본다)의보호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상표법은주지상표또는저명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의등록을금지하고그에반하는등록은무효심판의사유로규정함으로써간접적으로보호하고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주지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표지의사용을부정경쟁행위로규정함으로써직접적으로보호하고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상표법에규정이없는때에는그규정에따른다(부정경쟁방지법15조)고하여부정경쟁방지법상의주지상표보호와상표법상의등록상표보호에관한양법의충돌문제를해결하규정을두고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는상표법에따라주지상표또는저명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가등록되었고그등록상표에대한무효심판이제기된적도없는경우에그등록상표를사용하는행위가부정경쟁방지법상의부정경쟁행위로될수있는지가문제된다.



권영수 이사관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장
특허청 국제협력/상표과장
특허청 정책홍보관리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주지상표보호에관한법률적쟁점과 검토과제

대법원은상표법상의등록상표이더라도부정경쟁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
상표법의남용에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위정경쟁행위에해당할수 있
다고판시하고있다.

이하에서는대법원의입장과이에대한반론을살펴본후 바람직한해석론과
주지상표보호를위한현실적검토과제에대하여생각해보고한다.

II. 대법원의 입장(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가. 사건경위(요약)

소외(주)비제바노는1978. 3. 31 원고금강제화(이하원고회사라한다)의
계열회사로설립되어 “ 비제바노, VIGEVANO표장을사용한구두등의제품
을 제조하여전국의직영점또는대리점1988년에는25개소, 1995년에는53개
소)을통하여판매하여왔고, 그매출실적은8년의약12억 원에서1987년에
는약96억 원으로증가되었다. 그후(주)비제바노는1995. 6. 30 원고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당시의매출액은22억 원상당에이르렀으며, 원고회
사는합병일애위상표에관한권리를승계하였다.

한편, 탈퇴전 피고안정식은1988. 3. 30 시계류를지정상품으로하는“ 비제
바노 ”표장에관하여상표등록출원출하여상표등록을받고그 표장을부착한
시계제품(이하 비제바노시계라고한다)을생산 · 판매하여왔으며, 1994. 1.
14부터같은해11. 29까지총6회에 걸쳐원고회사에게합계6천8백만원 상당
의 비제바노시계를납품해서원고회사의판매점을통해서판매하였다. 그후
안정식은1997. 1. 8 피고인수참가인(이하원고회사라고한다)에게그 등록상
표권을이전하였고 그후피고회사가비제바노시계를생산 · 판매하여왔다.

이에원고회사는탈퇴전피고위상표등록출원당시에이미원고회사의상
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원고회사의상표라고인정되므로 널리알
려져있었다고주장하면서, 피고회사의비제바노시계제품의생산 · 판매행위
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므로그러한부정경쟁행위의금지및 위 행위로인한
조성물을폐기할것을청구하는소송을기했다.

나. 판단(발췌)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원고회사가그표장이부착된 제바노시계를생

논 단

산·판매하면그시계제품의주체원고회사와일정한관계에있는것이아닌
가하는인상을갖게되어결국동일한출처에~~사~~온것으로오인·혼동할우려
가있으며, 저명한상품표지와동일또는유사한상품표지를사용하여상품을
생산·판매하는경~~위~~록그상품이저명상품표지의상품과다른상품이라하
더라도, 한기업이여러가지이질적인산업분야에걸쳐여러가지다른상품을
생산·판매하는것이일반화된현대의산업구조에비추어일반수요자들로서
는그상품의용도및 판매거래의상황등에따라저명상품표지의소유자나그
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그상품이생산·판매되는것으로~~인식~~식하여상
품의출처에혼동을일으킬수가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
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2조제1호소정의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여구부정경쟁방지법제
15조에서상표법등 다른법률에부정경쟁방지법과다른~~규정~~정~~이~~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다른법률의규정을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상표권의등록~~대~~기의상품을타인의상품~~과~~차별시킴목적
으로한것이아니고국내에서널리인식되어사용~~되었~~타인의상표와동일
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인의상품과혼동~~을~~을
키게하여이익을얻을목적으로형식상상표권을취득하는것이라면그상표의
등록출원자체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써, 가사~~원~~리행위~~의~~
형을갖추었다하더라도이는상표법을악용하거나남용한것이되어상표법에
의한적법한권리의행사라고인정~~할~~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구부정경쟁
방지법제15조의적용이배제된다.

III. 대법원 입장에 대한 반론(서울대 법과대학 정상조 교수 견해)

대법원은위 사건의판결에서상표권의등록이타인의주지상표(부정경쟁방
지법상의주지상표를말하며, 이하이장에서는같다)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
를사용하여경쟁상이익을얻을목적~~으로~~으로상표권을취득하는것이라면~~그~~상표
의 등록출원자체가부정경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상표법을악용하
거나남용한것이라고판시하고있다. 그러나상표법의악용내지남용에해당

주지상표보호에관한법률적쟁점과 검토과정

하는지상표법의법목적을전제로해서판단되지않고부정경쟁방지법의각에서해석되는것이과연타당한지의문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제15조는상표법을우선해서적용하고부정경쟁방지법으로충적으로적용된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상표법의악용내지남용이라는전제하에상표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은부정경쟁방지법제15조의문리해석에모반하는것이다. 따라서부정경쟁방지법제15조를해석함에있어서상표법과부정경쟁방지법이충돌하는경우에는상표법이우선하고, 그러한충돌이없거나상표법에관련규정이없는경우에만해서부정경쟁방지법으로충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가. 양법의취지가충돌되지않는경우

상표법과부정경쟁방지법의취지또는적용결과가상호충돌되지않는경우에는상표법에의해등록된상표가가해자의상표이거나피해자의상표이거나부정경쟁방지법이적용될왔다. 예컨대, 등록상표의보유자라도등록상표에부등록사유내지등록무효사유가없거나상표법제51조에규정된효력범위를벗어나서상표권을행사함으로써결과적으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용한다고해서상표법의취지에반하는것이아니다. 피해자의상표가등록상표인경우에도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보호가부인되지않는다. 상표법은등록상표와의동일·유사성및 지정상품과의동일·유사성을기준으로해서상표권침해여부를판단하기때문에그보호범위가좁은편이지만부정경쟁방지법은지정상품의동일·유사성만을제삼지않고출처혼동이나식별력·명성의손상을초래한경우에는부정경쟁행위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주지상표의보호범위가비교적넓은편이다. 이경우에도부정경쟁방지법을용한다고해서상표법의취지에반하된것이아니다. 요컨대, 등록상표에해해서상표법상인정되는보호범위보다넓은보호범위를인정받기위해서부정경쟁방지법을원용한다하더라도부정경쟁방지법제15조가규정하고있는상표법우선의원칙또는부정경쟁방지법의충적적용과모순되지않는다.

나. 양법의취지가충돌하는경우

상표는본래식별력을갖는것이중요하지만, 상표사용자의입장에서고객

논 단

흡인력을 가진 표장을 선택해서 등록출원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우리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전에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의 이미 등록주지상표를 먼저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표법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이다. 현실적으로도 타인의 이미 등록상표를 출원하는 행위에 대해 출원거부나 출원취소 처분의 여지가 없는 전혀 상이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등록출원하는 일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표법은 상표 등록출원이 있을 경우 그 출원상표가 상표법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등록출원을 거절하도록 하도록 등록된 후에라도 무효심판에 의해서 등록상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이미 등록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현실적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의 적용결과가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 의 이미 등록주지상표를 상표법에 따르면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을 선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부정경쟁방지법 도 상표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을 하면 되는 것이다.

요컨대, 미등록주지상표의 선점이 상표법의 악용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상표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을 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악용내지 남용의 의미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는 무리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발 • 특 2006. 4



Dictionary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청구범위

당해 특허출원발명이 특허된 경우 특허발명으로
서 보호되는 보호범위적 기능과 발명을 구성하
는 구성요건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 청구범위 감축

특허청구범위의항수를삭제하는경우, 택일적기
재요소의 삭제 또는 상위개념으로부터 하위개념
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속칭 워싱턴 조약이라고도 하며, 반도체칩에 관
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89.5.26
WIPO에서 채택한 조약이다.

■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제3자
의 물건을 불문하고)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
를 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고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
을 수 있는 담보물권

■ 진정상품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
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
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공정거래위
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진정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상
품의 출처가 진정하여야 하고 상표표시가 진정
한 것이어야 한다.

■ 직무발명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
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
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으며, 특허법 제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지정대리인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절차에 행정청으
로부터 지정된 자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대리인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논 단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연재 일정 안내]

연 재	목 차
2006. 4월호	I. 연구목적
	II.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III. 판례분석을 통한 분리관찰가능여부(요약)
	IV.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구체적 인식사례들
2006. 5월호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06. 6월호	■두 단어의 결합이 모두 동종의 상품에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인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두 단어가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가 알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타 분리관찰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V. 결론

I. 연구목적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결합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므로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문자결합상표가 어느 경우에 분리관찰되면 거래상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이와 유사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참고하고자 함.

II.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표장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는, 전 표장의 음절수가 많거나 음이



이 제 명 상표3심사팀장

현재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상표3심사팀장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 교육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문자결합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관한연구

까다로워일반수요자나거래자재를그중일부분만으로약칭할여지가있는지, 각단어의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이나독창적식별력에도출되고그관념이나식별력이각단어가가지는고유의의미나식별력을압도하지는않는지, 상표의독특한외관으로인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를약칭하거나일부만에의하여인식하기보다는표장전체로서호칭하거나관념할것인지등을두루참작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III. 판례분석을 통해 본 분리관찰 가능 여부(요약)

판 단 요 건	분리관찰 가능여부
1.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가능하지 않음(전체관찰)
2.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된 경우	“
3.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된 경우	“
4. 쉬운 단어로 구성된 경우 (위 1~3의 전체관찰의 판단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경우)	가능(분리관찰)
5.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위 1~3의 전체관찰의 판단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경우)	가능(분리관찰)
6. 기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위 1~3의 요건과 반대인 경우	위 1~5의 판단요건과 음절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관찰가능 여부 판단

* 銀 두 단어의 결합이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이 상의 독자적인 관념을 말함

논 단

IV.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

■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지 아니하여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이 사건 출원상표 [그림 ①]

○선등록상표: [그림 ②]

○관련판결요지(2005하1899)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국거래계에서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어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국내에서의 그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까지 항상 전체로서 사용되고 인식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JIMMY 나 “CHOO”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모두 “JIMMY”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사례2)

○이 사건 출원상표: [그림 ③]

○선등록상표: NICOLE

○관련판결요지(2005하377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 미국의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항상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까지 “NICOLE” 부분이 여성의 흔한 이름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이 니콜 밀러로서 비교적 짧은 음절이라 할지라도 의

JIMMY CHOO

[그림 ①]



[그림 ②]

NICOLE MILLER

[그림 ③]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국민의 성명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거래사 회와 이 사건 출원 상표에서 “NICOLE”와 “MILLER”가 분리표기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NICOLE”와 “MILLER”가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랄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우리나라 수요자들에게 대 한 계에 있어서는 “NICOLE”와 “MILLER”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가 NICOLE 부분만으로도 호칭될 경우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사례))

○이 사건 상표: [그림 4]

○선등록 상표들: [그림 5](1), [그림 6]

○관련판결요지(2005허1783)

이 사건 출원 상표의 문자 부분이 일본 및 프랑스에 서명한 일본 출신 패션디자이너의 이름(YUKI TORII)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 상표를 일본 출신의 서명한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인식하여 왔고 따라서 항상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어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 판단한 사례

사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 [그림 7]

○확인대상 표장: [그림 8]

○관련판결요지(2005허3413)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흥부보쌈’ 혹은 기술적인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보쌈’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중요부분인 ‘흥부’로 호칭될 것이다. 확인대상 표장은 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긴 서비스표이고 ‘흥부가와’ ‘기가막혀’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일응 분리되어 호칭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흥부가’가 ‘기가막혀’라는 표현은 이 사건 심결일인 2005. 3. 30. 당시 일반

YUKI TORII

[그림 4]

YUKI

[그림 5]

유 키
Y O O K I

[그림 6]

흥부보쌈

[그림 7]

흥부가 기가막혀

[그림 8]

논 단

수요자나거래자들사이에 ‘ 흥부가 ’ 부분과기가막혀 부분이결합된 일체로서전체적으로인식되고널리사용되고있었으며, 기가막혀 는 주어의성질을일반수요자들의눈길을끌기 쉽게강조하는서술어로서주어진 흥부와 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구성부분임을알수있다. 결국, 확인대상표장은전체이며 흥부가가막혀 또한호칭되고관념될것이므로이 사건등록서비스표의호칭인 “ 흥부 또는 흥부보쌈과는그 호칭과관념역시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사례2)

○이 사건등록상표: RobertoRicci

○인용상표 NINA RICCI

○관련판결요지(2001후2986)

인용상표 NINA RICCI 는 ‘NINA ’와 ‘ RICCI ’ 부분이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이 사건등록상표및인용상표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국내수요자간에널리인식되어있는상표로서실제 거래사회에서항상 전체로서만사용되고인식되어져왔을 뿐 ‘ RICCI ’ 만으로분리약칭되어사용된예를찾아보기어렵고, ‘ RICCI ’ 가특별히식별력이강한부분도아니어서보통의주의력을가진국내의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거래상황에서상표를보고받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인용상표를 RICCI 만으로약칭하여호칭한다고보는 것은매우부자연스럽다할것이므로결국이러한구체적거래실정을 감안하면인용상표는 RICCI 만으로약칭된다고보기어려워이 사건등록상표와는유사하지않다고 봄에당하다.

사례3)

○이 사건등록상표 BEEN KID s

○인용상표 BEAN POLE

○관련판결요지(2003후5361)

인용상표의전체적인호칭은비교적짧은2음절에불과한 빈폴로서 1990. 2. 14. 상표등록된 이래국내에서장기간전체적으로사용되어온 사정에비추어보면현재 거래의실정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이 인용상표의 음절을 각각 분리하여 그 “빈 칸으로 호칭할 개연성이 실제로는 매우 낮다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 이 사건 출원 상표: [그림 9]

○ 선등록 상표 SKY

○ 관련 판결요지(2005하5495)

“sky blue”가 ‘하늘색, 하늘빛’을 의미하는 단어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인 SKY BLUE를 사전적 의미인 ‘하늘색’으로 관념하거나 인식하여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늘을 의미하는 SKY와 ‘푸른’을 의미하는 BLUE의 두 단어가 결합된 상표라고 인식할 것이고, “SKY”와 “BLUE”의 끝 글자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정렬하였더라도 여기에 두 단어를 분리관찰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SKY”와 “BLUE”는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2)

○ 이 사건 출원 상표: Style Manager

○ 선등록 상표: OIL MANAGER

○ 관련 판결요지(2004하1335)

이 사건 출원 상표는 “Style”부분과 “Manager”부분이 순차로 결합되어 있으나 결합의 결과 “스타일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위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뜻을 합한 의미 이외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분리거래상 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Style”부분과 “Manager”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 상표역시 “OIL”부



[그림 9]

논 단

분과“MANAGER”부분이순차로결합되어있으나결합의결과단어들이갖는본래의뜻을합한의미이외의새로운관념을형성함으로써 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라고볼 수 없어“OIL”부분과“MANAGER”부분이 분리되어관찰할수 있다할 것이다.

사례3)

○이사건출원서비스표: [그림 10]

○선등록서비스표: HART

하트

○관련판결요지(2005허304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하트 형상이두 개 겹친 도형에 영문자 ‘Heart’와 ‘Cashing’이 위, 아래로결합된서비스표안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과문자부분은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아분리관찰이가능하고, 그문자부분안 Heart’와 ‘Cashing’도그결합의결과각각의문자의 의미를합한것이상의새로운관념을낳는것도아니어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그중 ‘Cashing’은 그 지정서비스업안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대행업, 신용카드발행업, 용자제공업, 할부판매금융업과관련 하여돈을 빌려준다는의미를직감시켜식별력이없지만, ‘Heart’는 중학생이상이면알수있는영어단어로그것이어떤서비스를의미하는지알수 없다는사정만으로식별력이없찾은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Heart’와 선등록서비스표의 ‘HART’는 모두 ‘하트로 호칭되어양 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사례4)

○이건서비스표 [그림 11]

○인용서비스표 무진장

○관련판결요지(2005허1530)

(1) 이 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이식별력이있는지여부

이 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림 12]와집형상의도형아래에한글 ‘무진장



[그림 10]



[그림 11]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매운갈비가 결합된 서비스표인바, 그도형과 문자부분이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문자부분인 한글 ‘무진장 매운갈비 도한글’ 무진장과 ‘매운갈비가 결합된 단어로 결합의 결과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이 상의 새로운 의미를 낳는 것이 아니라서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그 문자부분 중 한글 ‘매운갈비’는 그 지정 서비스업의 취급 상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와 문자부분 중 ‘무진장’이 그 지정 서비스업의 취급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지 여부만 하여 보건대, 한글 ‘무진장’은 ‘사원에 설치된 금융기관,’ ‘끝없이 광대한 덕을 지니는 것,’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 ‘무주 · 진안 · 장수’의 말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이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록 ‘무진장’이 ‘매운갈비’와 결합하여 매운 맵다는 관념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직접 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진장이 그 지정 서비스업의 취급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와 선등록 서비스표가 모두 ‘무진장’으로 호칭, 관념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사례5)

○ 이 사건 출원 상표 DENTAL FRESH

○ 선등록 상표 DENTAL CARE

○ 관련판결요지(2004하5955)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이의, 치과(용)의 뜻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DENTAL”과 “새로운, 신선한”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FRESH”가 순차 결합한 표장이고, 선등록 상표는 이의, 치과(용)의 뜻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DENTAL”과 “걱정, 근심, 돌봄”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CARE”가 순차 결합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위와 같은 결합의 결과 위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뜻을 합한 의미

논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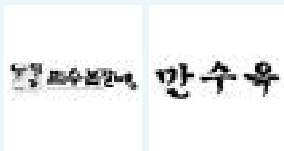
이외의새로운관념을형성함으로써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 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한것이라고볼 수 없어, 이 사건출원상표는DENTAL”부분과 FRESH”부분으로, 선등록상표“DENTAL”부분과 CARE”부분으로각 분리되어인식될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출원상표“DENTAL”만에의하여 덴탈로 호칭 및관념될경우선등록상표와호칭 및관념이동일하다 사례)

○이 사건출원상표: [그림 關]

○선등록서비스표[그림 關]

○관련판결요지(2005허3369)

(1) 이 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분리관찰가능여부
이 사건출원서비스표는소를 상징하는네모형상의도형과한글 ‘만수본갈비등이좌, 우로결합된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한글 ‘만수옥으로 이루어진서비스표인바, 이 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과문자부분은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러울 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아분리관찰가능하고, 이 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인한글 ‘만수본갈비’는한글 ‘만수 와 ‘본’ 및 갈비가, 선등록서비스표인한글 ‘만수옥은한글 ‘만수와 ‘옥이 각 결합된단어로그 결합의결과각각의문자의 의미를합한것 이상의새로운관념을낳지않고양 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같은식당업등에서동일한문자를포함하는표장이 많다거나그로인하여일반수요자가특별한경우가아닌한 일부 문자만으로약칭하지않는것도아니어서분리관찰가능한데, 이 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한글 ‘갈비는그 지정서비스업의 원재료표시여서, 한글 본 은 본가, 원조등의의미로음식점의 명칭에불여흔히사용되는단어여서, 선등록서비스표인한글 ‘옥 ’은 집을나타내는말로음식점의명칭끝 등에불여흔히사용되는 단어여서각식 별력이없다.



[그림 關]

[그림 關]

(2) 이 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유사여부

이 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구성은위에서본 바와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같고,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와 선등록 서비스표가 그 외곽에서 시각상 특이식별표지 확하게 인상예납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도형의 유무, 일부분자의 구성이 달라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가 도형과 각 문자부분으로, 선등록 서비스표가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본 화’ 갈비가, 선등록 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옥 이’ 각 식별력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에서 쉽게 어떠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불러일으켜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 서비스표는 모두 문자부분인 ‘만수’로 호칭, 관념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와 선등록 서비스표의 외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사례)

○ 이 사건 출원 상표 淸風明月酒

○ 선등록 서비스표: 明月

○ 관련판결요지(2000후1160)

이 사건 등록상표인 酒은 술을 의미하는 한자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통 명칭에 해당하여 유사 판단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다음 淸風(청풍)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라는 관념을, 明月(명월)은 밝은 달, 보름달이라는 관념을, 淸風明月(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② 결백하고 온건한 충청도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말, ③ 풍자와 해학으로 세 상사를 비판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관념을 각 가지고 있으며 또 明月淸風(명월·청풍)이라는 단어도 있어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숙어의 의미를 잘 모를 수요자의 경우는 淸風明月을 개별 한자의 관념대로만 인식하여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이 경우 淸風明月은 전체로서 단순한 용사와 명사가 반복된 것으로서 맑은 바람과 밝은

논 단

달이서로대등한정도의의미를 지고병렬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
 일 뿐(위에서본 바와같이淸風과明月이도치된明月淸風이란단
 어도존재한다) 그결합에의하여각 구성부분이본래의의미를상실
 하고새로운관념이형성되는것은아니므로淸風과明月이일체불가
 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는어렵고서로대등의미를가지는
 각 구성부분에의하여분리하여관찰되어淸風과明月의어느하나로
 약칭되거나인식되어질가능성이제할수없는바, 이와같이淸風明
 月이명월(明月)로약칭되거나인식되어지는경우에는이사건등록상
 표는인용상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한체적으로유사함

- 두 단어가결합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여분리관찰이가능하지않다고
 판단한사례

사례)

○ 이 건물원서비스표 백두대간

○ 인용서비스표: 백두

○ 관련판결요지(99허3658)

“백두는 사전적으로 “허영(虛影) 머리 툄 지칭하지만일반수요자에
 게는그 외에 도백두산의이름으로인식되기도하고, 대간은사전적
 으로 “아주간악한사람(大奸),” 사헌부, 사간원(臺諫) 등의의미를가지지만 백두대간에서사용되는의미는 ‘큰줄기
 (大幹)의 의미를가진다할 것인바, 이 건물원서비스표는 “백두”
 “대간이 결합되어단순히 백두산의큰줄기”가아니라 백두산으로
 부터두류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속리산등을거쳐지리산까지
 어지고주로한반도동쪽에위치하여남북으로뻗어있는산맥전체의
 줄기 라는새로운관념을형성하고유명사로서일반수요자에게인
 식되는사실을인정할수 있으므로이 건물원서비스표는 “백두”
 “대간으로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
 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할 것이어서 백두 또는 “대간으로분리하
 여약칭된다고보기는어렵고 “백두대간전체로서호칭, 관념된다고
 보아야할것이다.

문자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 여부에 관한 연구

사례2)

○본원상표: BODY GUARD

○인용상표: BOGARD

○관련판결요지(93후1001)

BODY GUARD(원래는붙여서쓰는단어이다)라는영문어가본래
“몸”을뜻하는“BODY”와“경계, 호위 등을뜻하는“GUARD”가결
합된단어이기는다하지만, 하나로결합됨으로써경호원이라는새로
운관념을형성한단어이므로이를분리하여관찰할것이라할것
인바,“BODY GUARD”는그구성단어들중어느하나의단어로약
칭되거나분리되어어느한부분만이강하게발음되고인식되어질성
질의단어로는볼수없고, 전체가일체로불리워지면서새로운관념을
떠올린다는것이므로전체적으로관찰하여야할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발 • 특 2006. 4

기획특집

특허기술이전 마케팅



김완묵

1982. 2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1984. 9월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1988~ 현재 매일경제신문사 기자(현재 차장)
 2004년~ 현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

21세기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산업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학자들은 1976년 스완슨(Swanson)과 보이어(Boyer)가 최초의 생명공학 회사인 제넨텍(Genentech)을 설립한 때를 생명공학시대의 출발점으로 본다. 생명공학은 이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며 인류의 건강 증진은 물론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넨텍의 설립과 과정에서 가장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닐스 라이마스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전도사이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제넨텍이라는 회사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은 1990년대부터 미국의 벤처 혁명, 지적재산권 혁명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이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하는 데 라이선스 어소시에이터(License Associator)라 불리는 기술이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라이선스 어소시

에이터는 대학에서 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돕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그 기술에 대한 사업 전망을 예측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아 나서는 마케팅 능력이 요구되는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계 지식과 경영학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계열 지식을 초월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벤처 혁명이 꽃을 피우는 데는 이들의 숨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학과 기업의 기술이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 창업자들을 발굴해 벤처 기업을 설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라이선스 어소시에이터는 구로 말하면 화려한 골게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라운드 의중원(中原)을 장악하고 필요한 곳



에 불을배분하는전략가이면 섣력자라고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최근도쿄대의야마모토와같은 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들 역할이두드러지고있다. 일본에서이러한일은 이제싹을돋우고성장을 시작하는발아기(發芽期) 내지놓기성장기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무서운기세로성장을하고 있어이른시일내에많은성과들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아직 논의단계라고할 수 있다. 2000년대한국에서벤처사업이꽃을 피운 적이있었다. 대학발벤처열풍이전국을휩쓴 시절이었다. 그러나한국의벤처열풍은그 열매를 맺지못했다. 꽃이핀 상태에서안팎의역풍에휘말려그만 낙화(落花)되었다고할 수 있다. 이런 원인에대해서는여러모로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와같은유효한 역할을하는사람들이없었기때문이야닐까 생각한다. 바탕과기본이없는 상태에서마음만 앞선창업자들만있었기때문환닐까? 앞으로도 상황은마찬가지가아닐까생각된다.

대학에서자라나고있는무한한창조적역량을 지닌인적자원과연구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 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와같은전문적인조력자들이필요하다. 이들중심적이고열성적이며개척자적인도움이있어야대학에서자라있는기업가정신을꽃을피울수 있을것이다.

물론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들 역할은단순히 창업에만관련되는것은아니다. 창업은오히려 이차적일수 있다. 대학에서발굴한지적자원을 기존기업에게소개하고이전하는역할이더 크다고할 수 있다. 그래서이땅위에서 태어난연구자원이아무쓸모없어버려지지않고소중한결

실을맺게하는역할이크중요하다.

다음으로중요한것은개척자정신을지니고뛰어난창조적역량을갖추고있으면서아울러치질 줄 모르는기업가정신을겸비한벤처기업가들을 발굴해이들의진로와방향을조타(操舵)하는역할이라고할 수 있다. 벤처기업가본래에대한 비전과기술적역량은있지만구체적으로이러한 비전과기술을현실화하는로드맵을갖추지못하고 있을수 있다. 한마디로설익은기업가(起業者)라고할 수 있다.

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는다양하게쌓은경험과 지식, 안목을바탕으로이들에게길을안내하는사람들이라고말해도좋을것이다.

이번에출시리즈원고는이런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들을소개하는것이다. 그중에서뛰어난 업적을쌓은미국과일본의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들에대한것이다. 이책을통해한국에서는전혀 사례를찾아볼수 없는, 외국라이선스어소시에이터들의발길을추적해봄으로써우리대학들의 연구자원을산업계에효과적으로소개하고사업화하는일이활성화되기를기대해본다. 아울러이 글은‘기술&발명을파는사람들(김완목역, 한국이공학사출판)을 요약한것임을밝힌다. <편집자주>

기술이전의금자탑

“어쩌면물건이될지도모른다.”

1974년 5월 20일 아침. 사무실에서신문기사를 스크랩하려고신문을읽어 내려가던라이마스는 무심결에한마디를중얼거렸다. 이날스크랩했던 것은뉴욕타임스에실린기사였다. 스탠퍼드대학의학내지에밥바이어스라는사람이기고한글이었다.

기획특집

이 기사는바로스탠퍼드대학의코헨(Cohen) 교수와캘리포니아대학교보이어(Boyer) 교수의 연구성과를정리한글이었다. 두꺼비와DNA 단편을벡터(vector-다른종의DNA를 미생물에주입하기위한장치가되는DNA)에 연결하여대장균에주입했더니, 다른종의DNA임에도불구하고DNA 복제및RNA 전사현상이일어나단백질로서발현했다고하는내용이었다.

라이마스는 산업화할수 있을것같다 고직감했다. 유전자를대장균에주입시켜유전 암호에 의해서정된단백질을생산할수 있다면지금까지 어려웠던단백질의대량생산이가능하게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사를읽고나서라이마스는바로코헨에게연락했다.

그러나코헨은특허출원을주저했다. 그는 ‘ 특허등록을하지말고 세상사람들이널리사용할 수 있게해주길바란다 ’ 20년 정도 걸려야만 상업적인응용이가능할것 이라고답했다.

하지만라이마스는포기하지않았다. 연구개발에서특허의중요성이나유전자재조합기술의상업적가능성, 라이선스계약에서안전성위수에 관한조항을담을 수있다고코헨을설득했다.

보이어와도접촉했다. 마침내이들은라이마스에게특허출원을해줄라고말했다.

이 기술에대한아이디어는1972년 11월 코헨과보이어가하와이국제회의에서만난것을기초로 생겨났다. 코헨은DNA를 붙이는벡터의연구, 보이어는DNA를 절단하는연구를하고있었다. 둘의연구를합치면다른종의유전자를다른 종의세포에주입해서단백질로발현시키는일이 가능하지않을까하는 생각에다다르게된 것이었다.

둘은공동연구를시작했고1973년 3월에는바라는대로결과가나와그 해 11월에는학술지에성과를발표했다.

● 프로세스뿐만아니라제품도특허출원

라이마스는계속해서캘리포니아대학교와코헨, 셰라라이선스수입의배분방법을결정했다. 스탠퍼드대학측이특허의출원인이되어서특허취득의 절차나라이선스의교섭을하도록하는한편 라이선스수입에서15%를 먼저갓기로했다. 다음으로실비를공제한후, 나머지를양 대학에서반씩나누도록했다.

코헨과보이어의논문은1973년 11월에발표됐기 때문에미국에서는그로부터1년 이내에특허를출원해야권리를얻을수 있었다. 하지만일본이나유럽, 한국에서는논문이발표된이후에는특허출원을할 수 없기 때문에포기할수밖에없었다. 마침내마감시한이임박한1974년 11월4일 미국특허상표청에특허를출원했다.

특허출원의서류안에는특허청구의범위를복수로해유전자재조합기술의방법에대한권리와유전자재조합을한미생물에대한권리를포함시켰다.

그러나당시에는생물자체가특허대상이될지 어떨지가아직정해져있지않았고미국특허상표청의심사관은제품인미생물에대해특허를주는 것에소극적이었다.

때문에라이마스는방법에대한권리와미생물에 대한권리를별개로구분해출원했다.

라이마스는 왜 ‘ 방법’뿐만아니라 ‘ 미생물 ’에 대해서도특허를획득해야겠다는생각을가졌을까.

방법에대한특허만성립하는경우다른종 유전자를주입한미생물을배양해서얻어지는미



생물에는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 이때문에 방법 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대한 특허도 필요했던 것이다.

방법 특허가 인정된 것은 1980년 12월 2일이었다. 미생물에 대한 특허는 두 개로 분할 출원되어서 1984년과 1988년에 인정됐다. 이즈음에 한미 미생물 자체에 대한 특허도 성립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제너럴 일렉트릭(GE)가 채굴한 석유를 분해하는 박테리아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는데 1980년 6월 미국 최고 재판소 판결로 그 미생물을 인정했던 것이다. 격심한 전쟁 끝에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인정 받았고 이를 미국 특허 상표청이 받아들여 미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준 것이었다.

●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라이선스를 공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특허가 인정된 80년대 초, 라이마스는 이 기술 외에도 특허화 및 마케팅이 필요한 기술을 60~70건 정도 갖고 있었다. 하나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신중하게 조건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생물학자, 특허 변호사, 스탠퍼드 대학의 변호사들이 참가했다. 대단히 기본적인 원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개사에 라이선스를 주지 않고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주기로 결정했다.

상세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미국 계약회사인 머크사가 세운 컨설팅 회사인 위크사의 어드바이스를 받기도 했다.

라이마스는 “ 위크사의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세운 회사에 그들의 어드바이스가 있었던 덕분에 적절한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 ”

고 회고한다.

라이선스 조건에 아무런 제약이 없던 1981년 8월 초, 스탠퍼드 TLO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라이선스 공여를 발표했다. 라이선스 조건을 잘 알리기 위해 과학 논문지인 ‘ 네이처 사이언스 ’에도 광고를 냈다.

내용은 1981년 12월 15일까지 계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공여한다는 것이었다.

라이선스를 받는 기업은 스탠퍼드 TLO에 계약금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한 후, 매출액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한다. 또 매년 1만 달러의 로열티를 선불할 필요가 있다. 기한까지 계약한 기업에게는 최대 5년간 일정 부분의 로열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매출액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제품은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결과 얻어지는 결과물로서 이종(異種)의 DNA를 연결하는 벡터(vector) DNA 및 그것들을 삽입시킨 미생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출판에 대한 이익의 10%를 로열티로 스탠퍼드 대학에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는 중간 제품다. 시말하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닌 원재료다. 예컨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미료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로열티 연간 매출액의 3%를 기본으로 하고 일정액을 넘으면 1%씩 떨어뜨리며 하한은 1%로 정했다.

세 번째는 의약품 등의 최종 제품이다. 연간 매출액의 1%가 로열티로 설정되었다. 매출액에 따라 0.75%, 0.5% 등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간다.

기획특집

네 번째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효소 등의 작용에 따라 생산 프로세스가 개량되어 얻게 되는 비용 절감에 따른 로열티다. 이경우는 절약된 코스트의 10%를 지불해야 한다.

라이마스는 이런 광고를 내보낸 후에 연락이 오기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며 그날 밤 사람이 아니었다. 라이선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계속해서 방문하며 세일즈에 열중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과도 접촉하기 위해 자주 출장을 나갔다.

● 마감 2주일을 앞두고 계약이 이어졌다.

라이선스 계약이 처음부터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계약 마감 2주일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 뛰어들어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마스를 돕고 있던 설리하인즈가 라이선스 계약의 신청 건수를 세어 보니 73개나 되었고 고수표는 모두 73만 달러에 달했다.

“그 순간이 기술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라이마스는 당시를 회고한다. “라이선스 신청서를 보내려는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마감일을 알린 것은 라이선스를 취득할 지 여부의 판단을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이마스는 유전공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펼쳐 관심을 돋우는 것이 기술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TLO에서 당시 라이마스를 보좌했던 존 선데린의 회고담이다. “라이마스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라이선스를 통해 초기 바이오 산업을 일군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술을 모든 기업의 연구 개발에 연결되는 원천 기술이라고 인식해서 비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공여하

는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마스가 다름이 선스 전략을 취했다 라면 바이오 벤처 기업의 발전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 생명공학 개척 기업, 제넨텍 탄생

코헨과 보이어의 발명에 힘입어 잇따라 벤처 기업이 생겨나면서 바이오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되었다.

그중에서 도록히 선구자적이며 대표적인 기업이 제넨텍(Genentech)이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발표된 후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해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제넨텍을 공동 설립한 로버트 스완슨(Swanson) 역시 유전자공학 기술에 기초해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 설립을 생각하고 있었다. 스완슨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시티뱅크에서 벤처 캐피털 투자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데 이어 벤처 캐피털인 크라이너·파킨스사에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

그는 정상급의 과학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공동 경영자가 될 생각이 없는가 묻고 다녔다. 그중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사람이 바로 보이어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코헨과 함께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결국 스완슨과 보이어는 1976년 생명공학 분야 최초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넨텍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 수개월간 유전자공학 기술을 이용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스완슨은 상업적으로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이어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를 밀하게 검토했다.



결국 첫 번째 목표물로서 사람의 뇌 호르몬인 소마토스타틴(Somatostatin)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와 이 연구실에서 대장균을 이용해 소마토스타틴을 생산하는 실험이 이뤄졌다.

스완슨은 자신의 비즈니스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일찍이 자신이 근무한 바 있었을 라이너·파킨스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성공했다.

이 회사는 기초 연구에 투자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신규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이다.

소마토스타틴의 생산 실험은 1977년에 성공했다. 잇따라 1978년에는 대장균을 이용한 인슐린의 생산에도 성공했다. 제넨텍사는 급속하게 사업을 확대하며 1980년에는 나스닥에 주식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크라이너·파킨스사는 3만 달러를 투자해 3,000만 달러의 자본이득을 얻었다. 이것을 계기로 벤처캐피탈 및 개인 투자자들이 유전자 공학에 주목하게 되었다. 제넨텍사에 의해 촉발된 많은 유전자 공학 관련 벤처 기업이 설립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설립된 벤처 기업들이 잇따라 대장균을 이용한 단백질의 생산에 성공하면서 주식 공개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제넨텍사의 성공은 대학의 분자 생물학자들에게도 유전자 공학 기술을 이용한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 소송의 불씨를 잠재우다

라이선스료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일은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라이선스료가 비싼 경우 기업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대학은 특허 침해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학으로서도 이 경우 소송에 패해 특허권을 잃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라이선스료가 낮은 경우 기업은 소송에 휘말려 손해 배상을 청구당하는 위험을 부담하기보다 낮은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일은 없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라이선스 조건은 극히 합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송의 불씨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11월 이후 미국에서도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허 출원된 내용이 출원일로부터 8개월 뒤에는 공개되도록 했지만 이전에는 출원한 명세서 및 특허 부여까지의 절차와 과정은 특허가 성립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특허비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라이마스는 특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출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희망자에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다.

출원한 내용 등을 누구든지 미리 접근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허가 성립한 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 정당성을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싶은 의도였다. 서류 특허상표청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열람 희망자가 많아 항상 차례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알바이트 할루윈도 출원 내용을 열람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즈음 할루윈은 석유 메이저인 엑슨사에서 특허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엑슨사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의 취급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할루윈은 이 분야의 특허에

기획특집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독자적으로 조사를 연구할진행하고 있었다. 엑슨사내에서는 이러한 그의 활동을 ‘할루윈의 도락(道樂)으로서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1981년 10월에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에서 DNA 2중 나선구조 발견자 중의 한 명인 왓슨(Watson)이 ‘생명체와 특허’라는 회의를 개최했다. 할루윈도 유전자공학 연구성과의 특허화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코헨과 보이어의 발명이 특허출원보다 1년여 전에 문헌으로 기록되어 졌다는 것과 공동 발명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코헨과 보이어의 특허에 정당성을 보강하는 결과가 되었다. 할루윈의 지적에 기초해서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당했다면 배심원에 게설명하는데 머리가 빠개 질지경이었을 것이다.

할루윈은 이후 바이오분야의 특허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엑슨사를 그만두고 바이오벤처인 시타스사로 이동했다.

시타스사는 스탠퍼드 대학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의 하나로써 매년 1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었다. 할루윈은 사장에게 “그와 같은 특허에 대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시타스사는 계약 1년 후 갱신료의 지불을 거부했다.

그러나 라이마스는 다시 한번 특허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밀하게 체크했기 때문에 특허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시타스사 사장을 샌프란시스코를 러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갱신료를 지불해 주도록 설득했고 사장은 그 장소에서 수표를 써 주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법률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코헨과 보이어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특허권은 1997년 12월 2일에 시효가 마감됐다. 특허가 부여됐던 1980년 당시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은 성립일로부터 7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스탠퍼드 대학은 50개가 넘는 기업체에 게 라이선스를 공여해 2억 5,000만 달러가 넘는 로열티 수입을 거둬들였다.

● 산학기술 이전에 큰 관심이 모아지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 특허는 바이오 산업을 일구는 데 공헌함은 물론이고 산학간 기술 이전에 도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 이전에는 기계공학, 물리학, 화학 등의 분야에 라이선스가 많았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 특허의 라이선싱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대학의 기술이 전기관은 생명공학 관련 라이선싱 활동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 학으로부터의 기술이 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탠퍼드 TLO는 252개 발명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생명공학 분야였다.

비독점 라이선스는 건당 라이선스 수입이 낮기 때문에 큰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왔지만 유전자 재조합 특허로 비독점 라이선스에 의해서도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낮은 금액의 비독점 라이선스를 공여하면 특허를 침해하는 움직임도 줄어들어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장점이 크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라이마스는 후에 들은 바로는 좀 더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했다면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소송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사례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코헨 · 보이어 특허의 최대 공적은 대학에서 생겨난 발명으로 거액의 라이선스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일이었다. 이 결과 여러 대학에서 TLO가 신규로 설립되거나 기존의 TLO 활동이 활발해졌다.

스탠퍼드 TLO가 태동했던 1970년대 초, 대학과 같은 비영리 기관의 TLO는 북미(北美)에서 30개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322개에 달하는 TLO가 설립되어 있다. TLO가 갖는 잠재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해 대학, 사회, 기업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뒤돌아보면 전부가 라이마스의 계획대로 진행

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당초 이 발명이 미국의 기술이 전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는 라이마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에서 유전자 재조합 관련 기사를 보았을 때에는 이 발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서 이것은 생애 한번 만나 볼까 말까 하는 큰 발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바이오 산업 전체에 기초가 되는 원천 기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도 그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이마스는 이렇게 회고한다.

다음호에 계속

발 · 특 2006. 4

세상에 이런 일이 발명 365

만 연 필

1809년 영국에서 ‘잉크병이 달린 펜’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 최초의 만년필은 잉크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았다. 쓰는 사람은 막대피스톤을 눌러서 압력을 주고 쓰기를 시작하면, 도중에 몇 번이나 압력을 주어야만 한다.

1884년 성능이 좋은 모세관 이용의 펜이 미국의 보험 외판원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것과 마찬가지로 펜촉 끝의 잉크 통로와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잘 연구되어 있어서 잉크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에 만년필이 들어온 것은 1897년 경으로 워터맨의 만년필이 일본을 거쳐 수입되었다. 만년필은 잉크가 샘물과 같이 솟아난다는 뜻으로 외국에서는 ‘파운틴 펜’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1884년 미국의 로우비가 보울 포인트 펜을 발명하였다.<王>

특허기술평가결과 활용사례



네오바이오다임(주) 

특이성 떨어지는 진단시약의 문제점 해결

간 질환진행상태반영한AsGP 이용간 질환진단키트

현재 병원 및 의원에서는 GOT, GPT 등의 간 질환 진단시약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특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기 염증 및 급성간염 진단에 있어서는 유용할 지 모르나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에 있어서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오진 및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의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이렇듯 간의 초기 염증 및 급성간염 진단만 가능하던 현재의 간질환 진단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까지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음은 물론 간질환의 진행상태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간경변, 간암의 경우 96%의 높은 판정비율을 나타낸다.

기술개발과정

네 오바이오다임(주)에서 현재 간의 질환 진단시약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질환의 진행상태까지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표지물(AsGP)을 이용한 간 질환 진단시약을 개발하게 되었다.

간염, 간경변, 간암 등을 포함한 간 질환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그리고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서 단일 질병으로는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 질환 사망률(1999년)은 인구 10만 명 당 23.5명이며,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고, 특히 40~50대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 비용이 큰 질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 및 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 질환 진단시약(GOT, GPT 등)은 특이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초기염증 및 급성간염 진단에 있어서 유용할지 몰라도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나 오진이나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간 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조기 진단 기술의 의미 비로인해 간 질환이 크게 악화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AFP와 CEA 같은 간암 표식자는 특이성이 낮아 환자의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급성간염에 비해 만성간염, 간경변, 간종양으로 또는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전되어 가는 경우에 그 과정을 추적·진단할 수 있는 진단시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단표지물질(AsGP)을 이용한 간 질환 진단시약을 개발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간 질환 진단시약은 혈중에 존재하는 아사이알로알파 1-산 당단백질(α -acid glycoprotein, AGP)을 특이적으로 인지

하는 항체를 포획 단백질(capture protein)로 렉틴(lectin)에 과산화효소(HRP)가 접합된 결합물을 사용하여 아사이알로알파 1-산 당단백질(asialo- α -acid glycoprotein, AGP)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2006년 판매 예정으로 유럽 27개국, 일본,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에 특허 출원 중이다.

개발과정에서 약자금 부족으로 개발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단시약 개발의 국내·외 전문인력의 참여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허기술 평가과정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특허기술의 기술성, 가치성을 평가받은 네오바이오다임(주)는 평가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8월에는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해외자금 유치 선정기업으로 선정되었다. Medical Data International, 한국제약협회 자료를 근거로 하면 세계 시장에서 2006년도 3,000,000백만원, 차기년도 3,300,000백만원, 차기년도 3,600,000백만원의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에서는 당해년도 200,000백만원 차기년도 220,000백만원, 차기년도 242,000백만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향후 3년간의 자료로 판단했을 때 시장 특성을 보면 국내와 국외에서의 시장상태는 독점 상태이고, 안전성과 지속성 그리고 성장성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GOT, GPT 등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간 질환 진단은 간의 염증, 급성간염 등과 같이 간기능이 악화되는 초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과 같이 간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AsGP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간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전되는

특허기술평가결과 활용사례

■ 신규 간 질환 진단시약 Neobiodigm AsGP 제품개요

AsGP 엘리스사 키트

- 샌드위치형 효소 면역 측정 방법에 의한 인체혈중에 당 단백질의 정량 검출용 키트
- 종합 병원, 일반 병원용

AsGP 레피드 키트

- 혈당을 대상으로 개발한 조기 진단 표식 물질(AsAGP)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혈당 진단용 면역합
- 개인의원, 한의원용

AsGP 레피드 키트 판독기

- 레피드 키트를 이용한 간기능 검사 시간의 단축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진단기기





것을 방지하는데사용될수 있는것으로평가받았다.

종합평가결과 우수 '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내용

네오바이오다임(주)은한국산업은행에서간질환의진행상태를반영할수 있는새로운표식물질 AsGP를이용한간질환진단키트에대한기술및 사업성에대한평가를받으며,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평가수수료의50%인 5,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이에따라1차적으로005년9월28일~29일 이

틀간말레이시아에서기술설명회를실시하였고, 2차로는2006년1월15일~17일 독일에서개최한 2005테크노개러반-기업상담회참가하였다.

간 질환의진행상태를반영할수 있는새로운 표식물질AsGP를 이용한간 질환진단키트를양 산화하고판매를위한케팅에소요될자금이필요하다는애로사항이있으나, 2006년도양상화 및 판매를계획하고있어서사업화에따른성공을 예견하고있다.

제공 특허기술평가팀

발 • 특2006.4

월트 디즈니의 키마우즈안

특 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 다.

이중의장에 해당되는 실화한 토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꿈과 환상의 공원인 디즈니랜드가 난한 화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화제의 아이디어맨은 미국인 월트 디즈니. 그는 ‘미키마우스’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일약 만장자가 되어 세계적 명물인 디즈니랜드까지 건설하기 애를 쓴다(미키마우스는 지금도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어느 날 가난한 디즈니 부부는 셋방에서 조차네 쫓겨 공원 한구석에서 앞날의 호구지책을 걱정하고 있었다. “당장 잘못도 마땅치 않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무리생각해도 살아갈 길이 막막할 뿐, 달리 뾰족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디즈니 부부에게 억만금 몰아준 사건이 벌어졌다.

귀여운 생쥐 한 마리가 그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디즈니 부부는 생쥐의 재롱을 보며 가난의 시름을 말끔히 잊곤 했다. 그런데 이날은 단지 현실적이고 통을 달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생쥐의 재롱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디즈니의 머리속에 한 가지 생각이 반짝스쳐 지나갔다.

“옳지! 세상에는 우리와 같이 가난에 쪼들리며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위해 이 양증스런 생쥐의 모습을 만화로 그려낸다면 큰 위안이 되겠지.”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디즈니는 서둘러 미키마우스라는 생쥐를 등장시킨 만화를 출판했다. 굉장한 인기였다.

세계 20여 개국 출판사에서 앞을 다투어 번역출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미키마우스 신드롬을 탄 만화는 매월 3천만 부라는 엄청난 판매부수를 기록, 출판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제작된 미키마우스 인형 또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친구로 자리잡으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

미키마우스는 저작권과의 장권으로 철저히 보호돼 모방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자연히 디즈니의 수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디즈니는 훗날 “미키마우스는 생활 주변에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다.”고 말했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
왕연중記

발 • 특 2006. 4



국제특허분쟁지도



III. ITC분쟁현황

1. ITC 개요

ITC(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의한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인 미국관세법337조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을 받아 결정을 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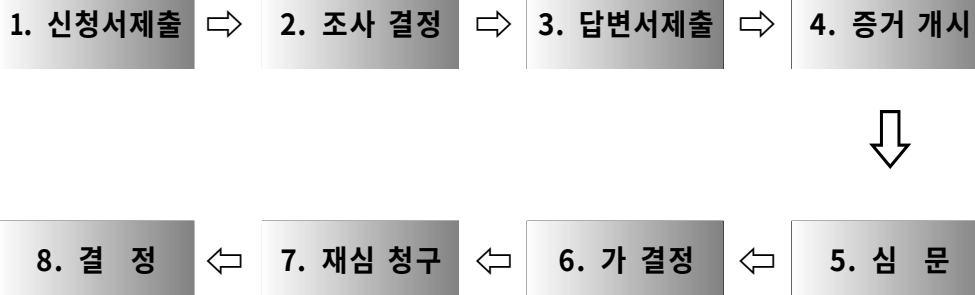
1974년 개정법에서 ITC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재판과 유사한 행정소송 절차로 ITC 자체가 수입배제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낼 수 있게

[연재 일정 안내]

연 재	목 차
2006. 1월호	제1장 특허분쟁의 환경 1. 특허분쟁개요 2. 미국특허소송
2006. 2월호	제2장 판례로 본 미국특허 1. 연방지방법원
2006. 3월호	분쟁현황 2. 연방항소법원
2006. 4월호	제3장 ITC분쟁현황 1. ITC개요 2. ITC절차의 순서 3. 전체연도별 제소현황 4. 지역별 제소현황 5. 지역별산업별 제소현황 6. 동북아지역의 결정유형별 동향 7. 한국산 반도체 컴퓨터 분야 ITC 제소현황
2006. 5월호	제4장 주요 제품별 분쟁현황 1. 분석대상 및 수록내용 2. 반도체 관련 소송현황
2006. 6월호	제5장 분쟁특허분석 1. 분석대상 2. 반도체 관련 분쟁대상 특허분석(사례) 보고서 활용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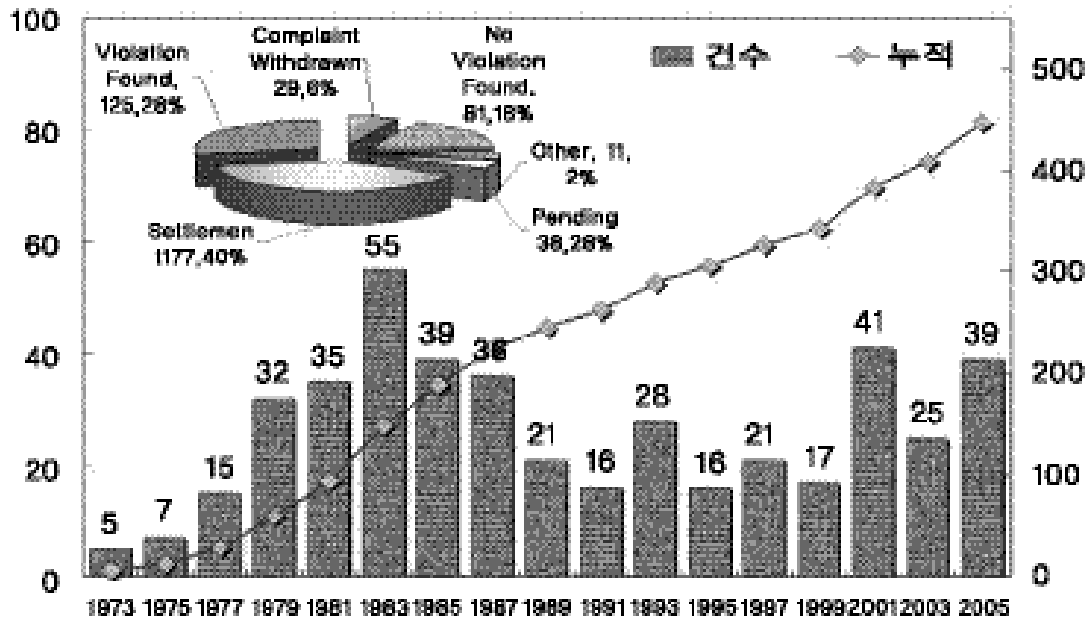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국제특허분쟁지도 보고서의 요약본이며, 상세 내용은 분쟁대비 특허정보넷 (<http://www.patentmap.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되면서부터 관세법337조가 현재와 같이 강력해졌으며, 통상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면 결정이 나고 침해결정이나는 경우 수입금지를 할 수 있어 미국 이외의 나라의 제품이 미국 특허나 기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



[그림 21] ITC 절차 순서도

미국편



[그림 22] 연도별 전체동향

한 효과를 나타내어 그 신청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ITC 절차의 순서

ITC의 절차는 [그림 19]와 같은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통상 사건 연방 공보의 조사 개시 공시일로부터 1년, 복잡한 사건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판결되고,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지방 법원에서 약 1년 방향

소 법원으로 향 소 한다.

3. 전체 연도별 해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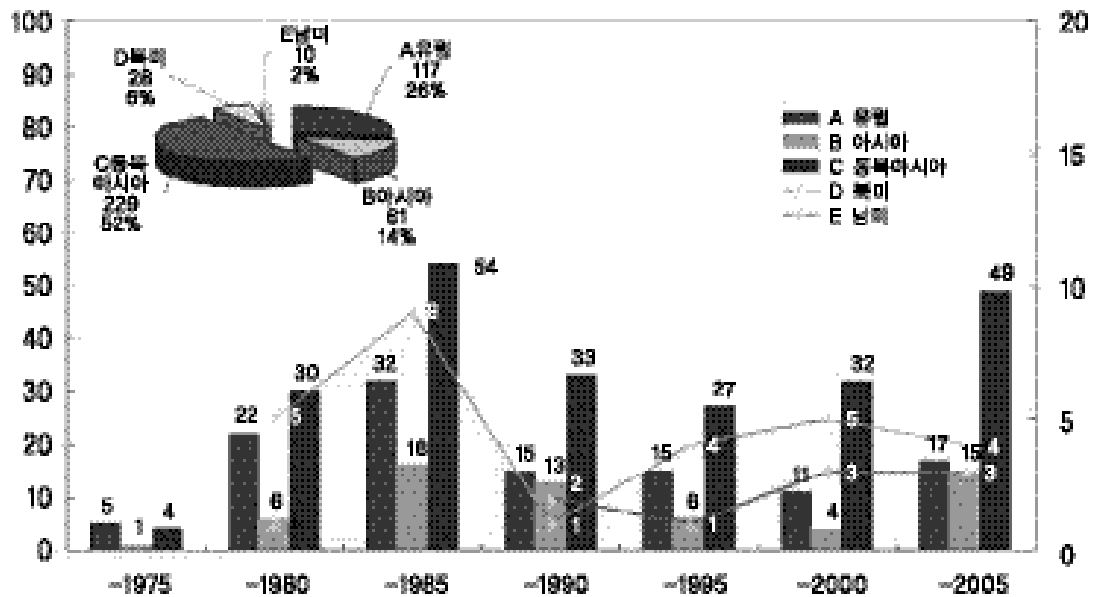
[그림 20]는 ITC 결정문 전체 동향으로서 1973년도 이후부터 2005년도 6월까지 공개된 ITC 결정문 총 448건에 대한 결정문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1979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해소 건이 상승하여 1983년도에 55건을 정점으로

- 1) Settlement : 화해
- 2) Violation Found : 침해
- 3) No Violation Found : 비침해

- 4) Complaint withdrawn : 취하
- 5) Pending : 계류중

국제특허분쟁지도



[그림 23] 전체 연도별/지역별 제소동향

하고 있고, 1990년대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TC 판결 총 448건의 결정문 중에서 최종적으로 177건(40%)이 Settlement¹⁾, 125건(28%)이 Violation Found²⁾, 81건(18%)이 No Violation Found³⁾, 29건(6%)이 Complaint Withdrawn⁴⁾, 38건(8%)이 Pending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별 제소동향

[그림 21]은 1973년도 이후부터 5년 단위별로 구분하고, ITC의 결정문에 나타난 피제소자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Resp. Products)를 분류하여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이 포함된 유럽 지역과

필리핀, 홍콩, 이스라엘 등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지역, 캐나다 등이 포함된 북미 지역, 브라질, 멕시코가 포함된 남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제소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 전체 제소동향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1980년부터 198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제소건을 기록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큰 폭으로 제소건수가 감소하다, 2000년도 이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피제소 지역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이 있는 동북아시아이며,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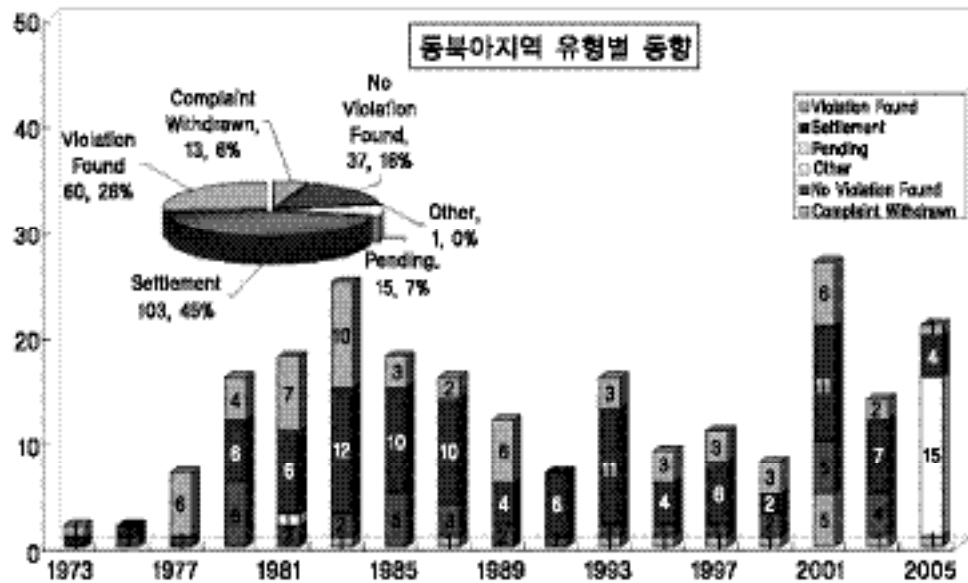


특히, 남미지역의 경우 전기/전자분야가 6건, 화학/제약/바이오분야가 2건, 환경/기타분야가 2건으로 기록되었으나 기계/금속분야는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동북아지역의결정유형별동향

[그림23]는 1973년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결정유형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제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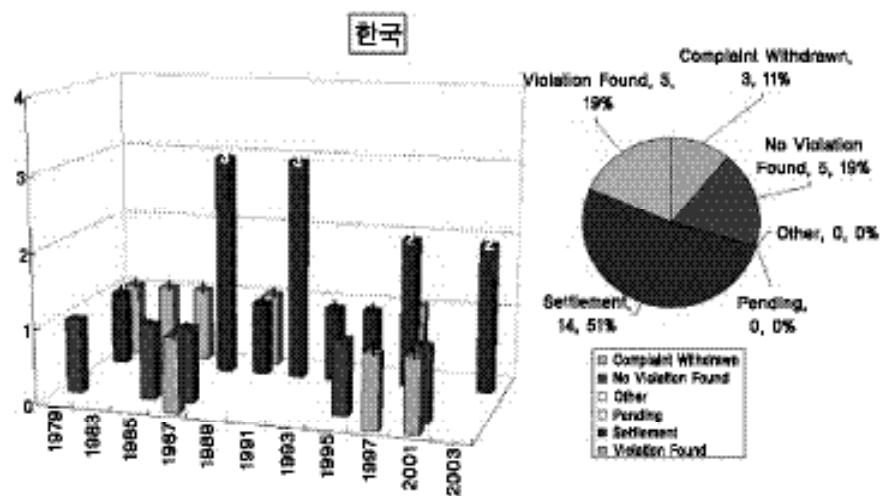
국제특허분쟁지도



[그림 25] 동북아시아의 연도별 결정유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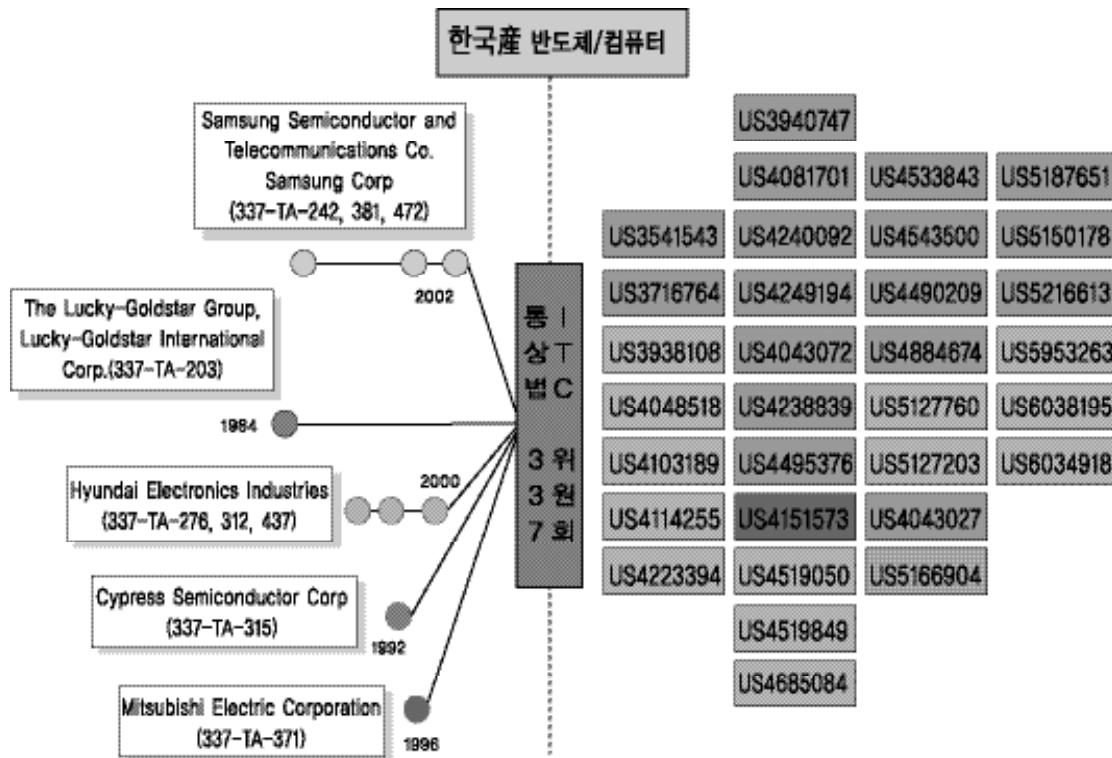
은 1983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Settlement로 결정된 제소건의 비율이 45%, Violation Found로 결정된 제소건의 비율이



[그림 26] 한국의 연도별 결정유형 동향 및 비율

미국편



[그림 27]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주요 ITC 결정문의 인용특허 현황

26%, No Violation Found로 결정된 제조건의 비율이 16%로 나타났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조건도 15건으로 나타났다.

7. 한국산반도체/컴퓨터분야 ITC 제소현황

[그림 25]는 한국산반도체/컴퓨터분야에 대한 ITC 결정사례(총 2건) 중 주요판례(9건)의 피제소자, 해당판례에 연관된 특허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1984년 Lucky Goldstar사에 제조소송 관련 특허는 1건이었으나, 2002년 Samsung의

반도체소송 관련 특허는 16건으로, 최근에는 다수의 특허를 소송에 제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산반도체/컴퓨터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판결 최종 처리는 대부분 화해(Settlement)로 종료됐다.

다음호에 계속

발 • 특 2006. 4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보고서

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4)

결론

현재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은개발의초기 단계이며, 상품화될기술도많지않기때문에, 인간, 로봇, 그리고상기개체들간의상호작용을 실효달성하기위해서는각기술요소별로아래와 같은다양한연구주제를포함하고있다.

멀티모달상호작용(Multi-modal interaction)

- 인지적/정서적모형

(cognitive/emotional modeling of HRI)

- 인간-로봇대화(Human-robot dialog)

- 인간-로봇팀웍(Human-robot teamwork)

- 사용자교시학습

(Human instructive learning)

- 인간-로봇상호작용척도(HRI metrics)

- 사용자평가(User evaluation)

- 적응적자율성(Adjustable autonomy)

[연재 일정 안내]

연 재	산업분야	세 부 분 야	과제명
2006. 1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1)	제1장기술의개요
	전기전자	차세대이동통신기술(1)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제조및응용기술(1)	
2006. 2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2)	제2장특허동향
	전기전자	차세대이동통신기술(2)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제조및응용기술(2)	
2006. 3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3)	제3장심층특허분석
	전기전자	차세대이동통신기술(3)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제조및응용기술(3)	
2006. 4월호	기계금속	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4)	제4장결론
	전기전자	차세대이동통신기술(4)	
	화학약품	탄소나노튜브제조및응용기술(4)	
2006. 5월호	전기전자	홀서버및홀게이트웨이기술(1)	제1장기술의개요
	전기전자	휴대이동방송기술(1)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진단및치료기술(1)	
2006. 6월호	전기전자	홀서버및홀게이트웨이기술(2)	제2장특허동향
	전기전자	휴대이동방송기술(2)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진단및치료기술(2)	
2006. 7월호	전기전자	홀서버및홀게이트웨이기술(3)	제3장심층특허분석
	전기전자	휴대이동방송기술(3)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진단및치료기술(3)	
2006. 8월호	전기전자	홀서버및홀게이트웨이기술(4)	제4장결론
	전기전자	휴대이동방송기술(4)	
	환경에너지	유전자이용진단및치료기술(4)	
2006. 9월호	전기전자	U-뱅킹기술(1)	제1장기술의개요
	전기전자	디지털이미지프로세싱기술(1)	
	화학약품	개량신약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1)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무기화학소재(1)	
2006. 10월호	전기전자	U-뱅킹기술(2)	제2장특허동향
	전기전자	디지털이미지프로세싱기술(2)	
	화학약품	개량신약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2)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무기화학소재(2)	
2006. 11월호	전기전자	U-뱅킹기술(3)	제3장심층특허분석
	전기전자	디지털이미지프로세싱기술(3)	
	화학약품	개량신약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3)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무기화학소재(3)	
2006. 12월호	전기전자	U-뱅킹기술(4)	제4장결론
	전기전자	디지털이미지프로세싱기술(4)	
	화학약품	개량신약기술(블록버스터약품등)(4)	
	화학약품	디스플레이용무기화학소재(4)	

※ 상기 연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쟁대비 특허정보넷 (<http://www.patentmap.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간-로봇상호작용응용연구

(HRI applications)

멀티모달상호작용과인간-로봇대화는음성, 제스처, 표정, 아이콘등다양한채널을통한인간과 로봇간의원활한의사소통이목적이며, 인지적/정서적모형은사용자의정서적상태인식, 행동의정서적표현, 정서적반응을이용한의사결정 또는학습등 상위수준의정보처리및 교환과 관련되어있다. 그외에도인간-로봇과관련된평가척도개발, 사용자평가등은로봇의상호작용

능력을측정, 평가하는척도및 표준개발과관련되어있다.

인간-로봇상호작용은

- 음성, 시각, 촉각등 다양한모달정보를이용하여사용자가편리하게로봇과교류하기위한멀티모달상호작용모듈
- 인간과로봇이협동적으로과제를수행하기위한정서적상호작용모듈
- 인간과로봇의관계가친밀하게유지되기위한인지적상호작용모듈로구성되어있기에, 본절에서는각인간-로봇상호작용의각기술요소별현황및향후전망을정리한다.

1. 얼굴인식 및 표정인식 기술

얼굴에대한강인한인식을위해조명, 포즈, 나이, 성별등세분화된파라미터들을고려한얼굴DB가구축되어연구되고있는추세이며, 다양한얼굴인식알고리즘개발을위해체계화된성능평가시스템이구축되고있다.

향후, 아래와같이3D기반의얼굴인식과표정인식기술이얼굴인식분야에서요구되는기술분야이다.

3D 기반의얼굴인식

- 자동얼굴특징점추출에의한기본표정인식기술
- 정면을기준으로좌우및상하포즈변화에강인한얼굴인식
- 조명변화에강인한얼굴인식
- 포즈변화에강인한표정인식
- 안경, 콧수염, 모자등내적조건에강인한얼굴인식
- 표정인식
- 정면을기준으로좌우및상하포즈에강인한

표정인식가능

- 사람의기본6표정(기쁨, 슬픔, 노함, 놀람, 두려움, 역겨움) 인식

2. 음성인식 및 화자인식 기술

인간과로봇사이의의사소통을위한음성인식을 위해서는원거리마이크및 잡음환경, 그리고 다양한주제등 해결해야할 많은문제점이남아있는상태이지만, 제한된주제하에서의음성인식기술은일부 실용화되고있다. 그러나음성인식기술의궁극적인목표인주제제한없이누구와도자연스럽게의사소통할수있는수준의기술은현재달성되지못했으며, 앞으로많은시간이소요되어야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이인간-로봇상호작용에특화된음성인식및화자인식기술의개발이이루어질것이다.

- 잡음에강인한특징추출기술, 잡음환경보상기술, 환경적응기술등을이용한잡음환경에서음성인식
- 어레이신호처리, 적응잡음제거를통한원격마이크환경음성인식
- 전처리음질향상기술의발전을위해저대역subband filtering 및temporal filtering 기술
- 화자방향검지, 어레이신호처리기술, 음원분류기술등을이용한음원검지
- 대화모델링기술, 화행처리기술, 대화생성기술, 멀티모달대화처리기술등을이용한대화이해및대화생성을위한대화인터페이스
- 원격음성호출을위한고잡음/고왜곡환경에특화된핵심어검출과음성인식및화자인식기술을통합한음성/화자/발화내용통합검증방식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보고서

- 음향모델링 및 언어모델링 기술, 모델적응 기술, 발음변이 처리 기술, 탐색 기술 등을 통한 연속 음성 인식 및 핵심어 검출
- 화자 특징 추출, 화자 모델 매칭 기술을 이용한 문장 종속 화자인식
- 화자 모델링 기술, 화자 검증 기술을 통한 문장 독립 및 문장 제시 화자인식

3. 촉각 인식 기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촉각 센서 중 의료용 기기에 적용되어 유럽의 의사가 미국 환자를 성공적으로 수술하기도 하였으며 자동차에 적용되어 운전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오락용 기기에 적용되어 사람과 오락기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촉각 인식은 인간의 피부와 같은 촉각 센서의 개발이 요구되며, 아래에 제시된 연구 과제 및 MEMS 및 회로 설계 기술을 응용하여 압력 감지 및 온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이 기대된다.

- 넓은 범위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으며, 열에 둔감하며 빠른 응답 특성을 보이는 압력 감지 센서
- 회로에 상주하는 생성 분 및 잡음의 영향 최소화하며, 잡음 영향이 적은 집적 회로 설계를 통해 압력 감지 신호를 효율적으로 추출해 내기 위한 회로 설계
- 폴리머 마이크로머시닝 기술을 이용한 유연성 있는 구조체 제작 및 재연성 있는 MEMS 공정 개발을 통한 인간의 피부와 같이 유연한 촉각 센서
- 소자 간의 안정적인 인터페이스 구조 및 탈착이 용이한 소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대면

적의 제작이 가능한 촉각 센서

4. 감정 인식 기술

음성을 이용한 감정 인식: 음성 정보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매체로서, 음성 정보에 담긴 정서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그 성능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표정을 이용한 감정 인식: 표정을 이용한 감정 인식은 face detection, facial feature detection, emotion recognition의 3가지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구는 2차원 이미지를 이용한 holistic한 접근 방법에서 시작하고 있고, 향후에는 facial feature의 motion 정보 사용 및 3차원 volume based approach를 이용한 접근 방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효과적인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감정 인식 기술 분야에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음성을 이용한 감정 인식 기술: 사용자 음성 분석을 통해, 화자 변경, 잡음 환경 하에서 사용자의 감정 상태 인식(음성에서 감정 특징 추출 알고리즘 및 추출된 특징을 이용한 감정 분류 기술)
- 표정을 이용한 감정 인식 기술: 사용자 표정 인식을 통해 다양한 감정 표현 인식(얼굴 특징 추출 기법 및 얼굴 표정 인식 기술) 및 사람의 기본 6 표정(기쁨, 슬픔, 노함, 놀람, 두려움, 역겨움) 인식

5. 원격 조작 인터페이스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 인터페이스 기

술은 서비스로봇을사용자들이쉽게사용할수 있도록해주어로봇의장가치를높이는데중요한 기술이다. 매개인터페이스기술은인간-로봇 상호작용기술의등장과더불어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 연구분야로서비교적짧은기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주행기능, 센서능의한계를 보완해주며, 각분야에있어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다.

- 가정용: 언제 어디서든가정에존재하는로봇과의상호작용을위하여매개인터페이스에대한필요성이증대
- 군사용: 인명손실을방지하고자, 원격지배한 정보는매개인터페이스를통하여 위험지역밖에있는사용자에게전송
- 의료용: 최근고령화사회의도래와더불어 의료복지및 재활지원에있어서로봇의 역할이기대되고있는데, 멀리있는 노인/환자의정보를매개인터페이스를통하여 얻고 위급한상황을미연에방지

원격조작인터페이스기술의발달방향

- 고속화대용량의다양한멀티모달정보처리 가능한인터페이스설계
- PDA(개인단말기)상에형상처리를활용한 인간-로봇상호작용
- PDA의 사용형태를고려한사용자얼굴표정 인식 기술을중심으로자연스러운사용자인터페이스
- 로봇에의한아이콘언어의다양한조합 이해 및 로봇과의상호작용에필요한아이콘 디자인
- 휴대형매개인터페이스상에서보여지는로봇 주변 환경의비전 정보와증강환경 정보

융합

- 휴대형매개인터페이스상에서아바타를이용하여로봇의감정상태표현하는감정아바타제작

6. 상호작용 기술

산업용의전통적로봇과달리인간생활에깊숙이침투할것으로예상되는서비스로봇의경우 인간과의친밀한유대는매우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인간이친근하게느낄수 있는로봇의의사표현기술이매우중요한데, 인간과의사한형태의감정을생성하는기술이필요하며, 또한인간을닮은형상의얼굴표정구현기술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인간형혹은비인간형지능형로봇의감정생성및 얼굴표정구현은큰 시장성을가지는매우중요한기술이될 것으로예상되나현재로는실험실규모의실험적연구만이진행되고있으며, 특히감정생성기술은심리학, 인지과학 등의주변학문과연계되어개발되어야한다.

한편이러한얼굴표정의구현은로봇의용도에따라사용자가원하는로봇의얼굴모양은다르기때문에용도에맞는얼굴형상을결정할필요가있다. 이것은심리학적, 의학적, 사회학적인혹은 공감대를조사하여결정하여야한다. 또한로봇 머리의형상혹은표정의구현은전체로봇형태와무관하지않다. 기계적특징이두드러지는로봇에인간형의머리를올릴필요가없으며, 인간적인특징이요구되는응용분야에로봇형의얼굴을가지는로봇을사용하는것도적합하지않다. 따라서적용분야에적합하게전체로봇의개념을정립하고그 전체형상을결정한다음그개념에적합한로봇머리를결정해야할것이다.

또한, 적용시장의특징을간과할수 없다. 노인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보고서

에게 적용될로봇인지, 어린이에게 적용될로봇인지에 따라 필요로 되는 로봇의 개념도 달라지고, 머리모양/표정의 구현의 개념도 달라진다. 또한 정상인에게 적용될 것인지, 물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인지, 정신적 장애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될 것인지, 감정의 활성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될 것인지, 치매환자에게 적용될 것인지 등의 경우에 따라서도 필요한 로봇의 개념과 얼굴 및 표정 구현의 개념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적용할 대상의 특징 및 요구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연결되어야 한다.

향후, 인간-로봇 상호작용을 위한 표정표현 기

술에 있어서 연구되어 질 기술 분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인간과 유사한 얼굴형상 구현
- 인간의 피부와 유사한 물성을 가지는 피부장착
- ※ 표정표현을 위한 얼굴형상의 기능
- 목의 자유로운 회전
-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한 표정의 자연스러운 구현
- 안구의 자유로운 구동
- 피부에 심어진 센서로 접촉/압력/온도 정보 획득 가능

세상에 이런 일이 발명 365

망 원 경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유리나 보석을 연마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안경 직공이 많았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판스 립펠스하이는 자신이 닦은 렌즈 솜씨를 보기 위해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각각 한 개씩 들고 근처의 교회 탑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두 개의 렌즈를 조금 떼어서 보았더니 탑이 놀랄만큼 크게 보였던 것이다. 그는 즉시 이것을 이용하여 1608년 수정렌즈로 만든 망원경을 만들어 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이도 망원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물체의 3배, 다음에는 30배 이상의 크기로 확대하여 볼 수 있게 만들어 천체를 관측, 달 표면의 산맥, 태양의 흑점, 금성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 등을 발견했다.

같은 무렵 독일의 케플러도 망원경을 만들었다. <王>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보고서4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4)

결론

1. 특허출원 동향

휴대인터넷기술은무선전송기술과시스템구현기술에서모두광목할만한발전을이룩하였으나 외국의원발기업들이1990년대초반부터휴대인터넷기술개발을작한반면국내기업들은1990년 중반부터본격적으로휴대인터넷기술개발에착수하였다. 그러나최근의출원동향을살펴보면삼성전자, 엘지전자, 에스케이텔레콤, ETRI 등 주요출원인을중심으로국내외특허출원활동이 활발히진행중이다.

한국기업의휴대인터넷관련기술수준은특정분야(OFDMA, 인증기술, 측정기술, 이동성관리)에대해서는강점을보이고있으나대부분의기술분야에대해서는높은수준이없는것으로분석

되었다.

강점을보이고있는분야로는휴대인터넷기술의필수항목인무선전송기술과중점속및듀플렉스기술분야로써, 특히해당분야의OFDMA 기술은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출원된전체특허중 한국기업에서출원된특허가약51%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경쟁력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한국기업의중점속및 듀플렉스기술분야에강점을보이고있는이유로는2002년부터휴대인터넷기술개발에착수하여2003년 ETRI, 삼성전자, KT, 에스케이텔레콤이참여한휴대인터넷컨소시엄을구성, 연구개발에본격적으로뛰어난결과로보인다.

열세인분야로는상용서비스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기술분야로써, 송수신기술과측정기술이 있고, 특허자원관리및 효율증대분야는한국기업의집중적인연구개발이필요하다.

이동형휴대단말기의경우삼성전자가최초로OFDMA 기술을이용하여단말기를개발하였으나 특허경쟁력에있어서는외국 기업과동등한정도의경쟁력을가지고있었으므로분석되었다.

최근10여 년간우리나라는CDMA 상용화와초고속인터넷활성화, 이동전화단말기수출등을 통하여전 세계통신시장의주목을받아왔다. 그러나CDMA 시스템이나이동전화단말기의생산이증가함에따른기술료부담또한크게증가하여수익성을개선하지못하는주된요인이되었다.

그래서한국기업들은외국기업들이핵심특허를가지고있는CDMA, GSM 등의디지털화된음성통신분야에대응하기위해서휴대인터넷의케이터통신을위한독자기술을주도적으로개발하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보고서4

고일찍 상용화시켜 세계적 인터넷통신 표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휴대인터넷에 관한 한국기업의 연구방향은 무선전송기술분야의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휴대인터넷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 및 향후 시장을 선도할 분야인 응용서비스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진행시켜 휴대인터넷 분야에 대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의 대응전략

최근의 지식재산전략은 종래의 라이선스 내지 크로스 라이선스 전략을 뛰어넘어 사업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적극적 활용에 주력하는 추세이다. 사업의

우위성 확보는
독자 기술

에 의해 차별성 있는 제품화를 추진하고, 획득한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타사가 시장 침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달성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분석된 휴대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선발 외국 기업을 물리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략 및 연구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타사의 신규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이나 노하우를 추출해 내야 하며, 이러한 기술에 관해서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차별 기술과 주변 기술까지 두 특허화 함으로써 독자 기술을 완벽하게 둘러싸는 지식재산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인터넷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통신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중속 이동 중에도 높은 전송 속도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통

신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며 통신과 방송, 통

신과 교통, 통신과 가전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을 제공해 줄 차세대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광

대역과 멀티미디어로 집약되는 속성을 지니는 휴대인터넷은 유무선 통합과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진화적 패러다임을 견인할 핵심 서비스로 전망되고 있는 바, 국내 기업으로서는 특허 분쟁 발생 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방위적인 특허력 확보를 위해 선행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본 특허 및 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보고서4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응용기술(4)

결론

1. 제조기술

탄소나노튜브의 성장방법은 고순도, 대량합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주요출원사별로 각각의 성장기술방법을 이용하여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아크방전법, 레이저착법, HiPCO법은 이미 원천기술이 나온 상태이다.

탄소나노튜브의 기능화는 성장방법과 함께 적용하기 위한 최종제품을 목표로 한 전기전도성, 배향, Size 등의 특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향후 기술의 전개는 개발 방향은 응용제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적요하고 자 하는 제품별로 더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순물의 제거 기술은 탄소나노튜브의 용도가

전자 Device 분야에서 더욱 정밀화 고도화됨에 따라 그 기술적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적용 제품별로 특성화되며 향후 분쟁에 예상되는 분야는 제조방법이나,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적합하게 그 특성이 제어된 기능화, 불순물의 제거 등의 분야로 예상된다.

탄소나노튜브는 나노기술의 각 기술분야와 나노재료 응용 연구에 영향력 있는 재료로 연구 활동의 강화 및 지원이 요구된다.

주요 과제는 구조 결합이 적고, 저렴한 제조법의 개발이 강하게 요구된다.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 합성 기술의 개발은 전자 디바이스에 응용을 위한 직경, 위치, 방향 제어 기술은 확립이 요구되며, 금속성, 반도체형 탄소나노튜브의 분리 제조가 중요한 한계이다.

제조 기술의 확보는 향후 전개될 각 응용 분야에서 응용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성장 기술 및 분리, 정제, 기능화 기술의 영향력 있는 특허의 확보가 향후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전개되는 전기, 전자, 재료 등의 관련 산업 분야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2. 응용기술

광 반도체 분야의 시장 규모는 현재에서 2010년 적 크고 앞으로는 세계적인 IT 기술 혁신의 조류에 따라 광통신 디바이스 · 광 반도체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유럽에서 세계 대 기술로서 광 디바이스의 연구 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다.

Nano Electronics 본 기술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탄소나노튜브의 성장 기술, 위치, 밀도, 방향, Chirality 등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

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보고서4

서 현재까지 특허내용으로 특정 형태의 구조가 주도할만한 기술적 추이가 정해지지 않았다.

Energy 분야 중 연료전지 응용 분야의 특허는 아직은 활발하지 않고, 탄소나노튜브와 관련한 탄소나노혼등 나노구조의 다른 형태에 대한 특허가 다수 발견되었다. 향후 연료전지 기술에서 여러 나노구조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허도 다각도로 나타나리라 판단된다.

Mechatronics 분야 중에서는 나노탐침 기술이 주요 과제이다. 나노스케일의 가공 기술을 나노탐침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초기에 원자현미경용 probe와 같은 측정 기술에 적용되어 왔으

며, 리소그래피, 대용량 저장 장치에 응용 가능성이 제시되어 개발 및 응용에 대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나노화합물의 기술에서는 각종 고강도 소재에 나노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구체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높은 전성 박막이나, EMI 차단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건이 소수 견등 장하고 있다.

제공 특허기술평가팀
발 • 특 2006.4

세상에 이런 일이 발명 365

매 직 테 이 프

매직테이프는 스위스에 사는 조르즈 도메스트랑이라는 사람의 작은 관찰에 의해 '벨크로사'를 탄생시킨 발명품이다.

도메스트랑은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취미로 시작한 사냥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1935년 가을 어느 날, 도메스트랑은 사냥개와 함께 사냥에 나섰다가 산토끼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뒤를 쫓았다. 그가 숲에서 나왔을 때는 옷 전체가 산우영 가시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옷을 벗어 털었으나 좀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집으로 돌아와 확대경으로 산우영 가시를 관찰하였다. 산우영이 갈고리 모양인 것을 본 그의 머리 속으로 매직테이프의 원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로 닿는 순간 철썩 붙었다가 약간의 힘을 주면 떨어지는 매직테이프가 태어난 것이다. <王>



특허기술거래? 『특허기술상설장터』로 문의하세요!

특허기술을 이전하고자 하십니까? 특허기술이 필요하십니까?

- 특허기술거래, 그게 뭐죠?
- 특허기술거래가 어떻게 하나요?
- 좋은 특허기술, 어디 없나요?
- 특허기술거래하고 사업화, 도와주는 곳 어디 없나요?
- 거래상대방, 어떻게 찾나요?
- 계약서, 어떻게 작성 하나요?
- 거래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모두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로 오세요!

주요 기능

▶ 특허기술이전지원

- 이전대상우수특허기술의상설전시
- 특허기술이전자문및상담지원

▶ 특허기술사업화자문

- 특허기술사업화정보제공및상담지원
-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홍보·전시

설치현황

- ▶ 위치: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
(서울강남구역삼동)

- ▶ 규모: 약 200평

주요 구성

- 상설전시관 : 이전대상특허기술0점상설전시
 - 이전대상특허기술의패널, 리플릿, 시뮬레이션또는평가서제공
 - 터치스크린을통한검색및상세자료(명세서, 사업계획서등) 열람
- 성공사례관 :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패널및제품7점전시
- 투자설명회장 : 연중발명가와자본가의만남의장소제공
- 영상관 : 대형TV로특허기술거래및사업화홍보영상물상영
- 상담실 : 특허기술이전및사업화를위한종합정보제공및상담
- 자유게시판 : 자유롭게이전희망기술을소개할수있는장소
- 넷카페 및 휴게실 : 이전특허기술DB 검색/등록및휴게공간

안 내 : 02 - 3459 - 2845 ~ 50, <http://www.patentmart.or.kr>



임선하 창의교실(3)

창의성은 모두가 일등하는 것



임선하 현대창의성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1983-1995)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현재 현대창의성연구소 소장

활동

EBS - 나도 논리 박사, 창의성 교육
KBS - super TV, 엄마랑 나랑
MBC - 파워 소비자 시대(학습지 평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UN - 창의성 교육 특집 13회
기타 수회 출연

누가 으뜸인가?

중국남제시대의유명한서예가왕승건은왕희지의4대 손자인데, 그의행서와예서는왕희지를 이어받아서조예가배우깊었다.

당시남제의황제소도성도서예에능해서스스로를대단하게여겼다. 그는자신의서예가왕승건보다못하지않다고생각해서어느날 그와서예를건주었다. 글씨를다 쓰고나서황제가거만하게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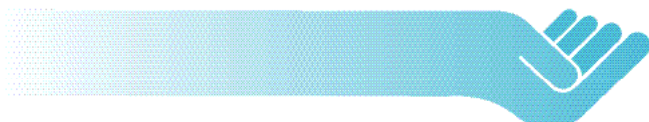
“ 어디말해보시오, 누가으뜸인지말이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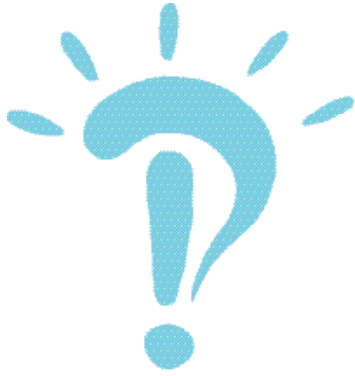
왕승건은자기를낮추고싶지도않았지만, 그렇다고황제에게죄를얻고싶지도않았다. 그가이맛살을찌푸리면서말했다.

“ 소신의서예는신하들중에서으뜸이고, 폐하의서예는황제가운데서으뜸입니다. ”

황제는듣고나서한바탕웃을수밖에없었다.

※출처: 세치허가백만군사보다강하다(김영005)





I. 들어가는 말

창의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창의성의 용처는 어디인가? 늘 접하는 질문이지만 답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가 하는 답은 이렇다. 창의성을 아까운 금고널리 쓸수 있다. 아는만큼 보이니 당연한 일이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느냐 모르느냐의 여부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더 알고 모르느냐의 수준 문제이다.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으면 다른 대상과 그만큼 더 많은 관계를 맺을수 있다. 이러니 쓰임새도 많아질 것이다.

창의성의 쓰임새는 무한하지만, 그중에서 강력한 쓰임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등으로만 드는 비책이다. 아니 자신을 스스로 일등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는 것이다. 위의 왕승건의 글에서 보듯이 신하와 황제를 다 합한 전체(즉 한 나라의 국민) 중에서 일등을 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의 일등을 뽑는다), 신하 중에서 일등이 있고, 황제 중에서 일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일등이 적어도 한 명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일등의 영역을 구체화시키면 세상에 수많은 일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다 일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수월성(excellence)이라고 한다. 수월성은 모든 산이다 봉우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봉우리는 정상 의미의 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각각의 차별화된 영역에서의 의미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반 용어로는 수월성이라고 하지만, 백낙청 교수은리말에서 자주 쓰이는 탁월성으로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월성이 건탁월성이건 우파회에는 일등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뾰한 과도한 경쟁과 다툼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월성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 수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등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블루오션(blue ocean)에 해당한다. 하나의 영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일등하기위해 사투를 벌이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모두가 다 탈락하고 마는 무한 경쟁 영역(red ocean)이 아닌 경쟁자가 없거나 별로 없는 영역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묵묵히 추구하여 최고 가치에 이르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여유로워 보인다.

II. 나는 어디에서 일등인가?

수월성 에 기반을 둔 일 등 개념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일의 영역과 독특한 사고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세상의 모든 사물은 각기 서로 다르다는 생각(분별심)과 그 결과 서로 다른 사

임선하 창의교실(3)

고와 행동이 나타난다는 생각(반성)으로 연결된다. ~~이제부터~~, 해운대백사장의 모래는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분별심) 그 결과 곁으로 드러난 모습은 시시각각 바뀐다는 생각(반성)으로 이어진다. 물론 해운대백사장의 모래를 다 파헤쳐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 ~~는~~ 아니라 관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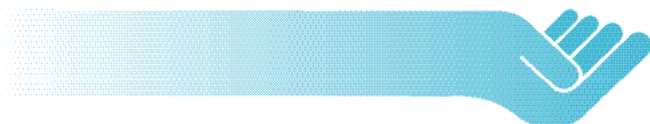
분별심과 반성은 개인과 조직 사이의 차별성으로 나타난다. 이 차별성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경영학계에서는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고 한다. 포지셔닝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회사의 생존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다. 일테면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그릇과 그런 물건을 생산하던 회사가 공급과 ~~잉여~~에서 생존 전략으로도 입한 전략인 것이다. 하나의 확실한 상품이 아니냐고 회사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준 것이다.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들은 하나같이 이 전략의 수혜자들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을 다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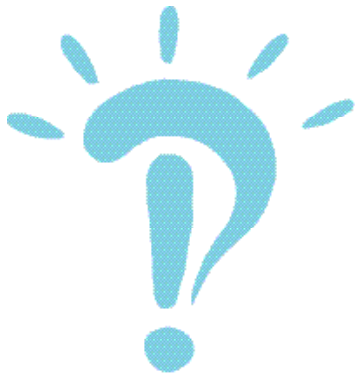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시켜 보자. 필자이나 임선하는 창의성 전문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었다. 부자되기, 건강 ~~한~~람, 마음씨 좋은 사람. 하지만 이들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동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창의성 전문가 ~~책~~기를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다. 나 임선하는 창의성 전문가 ~~되~~려고 한다. 따라서 목표와 관계 없는 일은(혹시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너만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다. 서서히 효과 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지한 노력은 기본 요건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에게 스스로 던지는 쉬임 없는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일하는가?' 하는 것이다. 포지셔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으려면 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III. 생각이 다양하니 모두 다 일등이다

일등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인 셈이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일등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등하는 방법 역시 무수히 많이 개발되었다. 일등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세 시간 자고 일할 때 두 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은





일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일등으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게 된다. 이제 세상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른 방법들이 등장한다.

가. 노력하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추구했던 일등에 이르는 방법이다. 피나게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위에 올라서야 일등으로 인정받는다. 잠을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방법이 이미 다른 사람의 해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릴 때만 유효하다. 만약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 일이나 문제 또는 답이 없는 문제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세계 최고의 것 만들기

세계 최고의 것은 당연히 일등이다. 최고의 제품은 아무나 만들지 못한다. 필기구의 명품인 몽블랑만년필은 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범위를 좀 더 좁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만약에 내가 최고의 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일등이다.

다. 세계 최초의 것 만들기

우리는 역사에서 세계 최초의 것(일등)에 대해서는 배웠으나 일등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 역사는 일등만 기억하고 이등은 망각하기 때문이다. 대서양을 비행기 단 한 척으로 단 한 최초의 사람 윈드버그이다. 학교 공부를 한 사람은 다 배운 사실이다. 그렇다. 단 한 척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배운 적이 없다. 이등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문화가 다양한 세상에서는 세계 최초의 것을 만들기가 쉽다.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영역을 깊이 파볼수록 자연스럽게 최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미 있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발명은 그 자체로 최초의 것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조차 최초이다. 야생화라고든 최초의 정원, 황토라고든 최초의 벽지 등이 그것이다.

라. 목표 바꾸기

목표 바꾸기는 이등을 일등으로 바꾸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일테면 대서양을 비행기 단 한 척으로 횡단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이미 린드버그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대서양이 아닌 한강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강을 비행기로 단 한 척으로 단 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수단 바꾸기

임선하 창의교실(3)

수단을바꿀수도있다. 비행기로횡단하는것은일등이못된다면다른수단을동원하는것이다. 이용가능한수단을점검해보는것이다.

바. 의미 바꾸기

상암월드컵경기장은 ~~형~~태의아름다움으로인해계적인명성을얻고있다. 이경기장을설계한 류춘수건축사는우리나라사람들이즐거뜨우는방패연~~을~~토대로설계했다고한다. 그는이어서 부산APEC 회담장인누리마루를설계할때는시골의원두막아이디어를차용했다고한다. 이는이미 존재하고있는사물이나사상의의미를~~새~~구성하는것이다. 이를창의성학자들~~을~~추라고한다. 유추는한사람이이미가지고있는경험을자신~~이~~해결하려는~~상황~~에맞게재구성하는것이다. 일테면대서양을비행기로횡단하더라도그 의미를달리하면최초가될 수 있다. 지구환경기금마련을위한대서양횡단비행은~~지~~금한다고해도최초~~의~~행이된다.

사. + 1 전략 활용하기

기존의것에무엇인가를~~활~~함으로써최초가~~되~~게한다. 대서양을횡단~~해~~강아지와함께비행하면 최초의애견가~~가~~될 것이다. 여자와함께비행했다면최초의여성주의자가~~가~~될 것이다. 기존의것에무엇인가의미있는것을더하는것은매우쉬운일이다.

아. - 1 전략 활용하기

기존의것에무엇인가를더하는것도있지만빼는것도있다. 나침반을~~배~~행하면최초의나침반없는비행이될것이며, 옷을벗고비행하면최초의자연주의~~자~~가~~가~~될 것이다.

IV. 글을 맺으며

창의성은모두가일등하는것이라는이~~번~~호의제목은수많은일등~~활~~등으로써그의미~~가~~있다. 높은산, 낮은산가리지않고정상까지올~~러~~리등을맞보는것~~의~~미있는일이며, 다른사람~~이~~하지 않는일을찾거나만들어몰입하는것도~~의~~미있는일이다. 이제사회적으로지배적인가치하나로세상을재거나평가하지말아야한다. 모두가다서로다른가~~치~~를~~활~~하면서진지하~~게~~아가는존재임을받아들여야한다. 그리고위에서열거한일등하는방법여덟가지중에서노력하기, 최고의것만들기, 최초의것만들기를제외한 나머지다섯가지는능력이있어야할 수 있는것이아니라마음만 있으면언제든지할 수 있는일임을알아야한다. 이제일등~~을~~등~~을~~하고싶은사람이하는것임을알아야한다. 이제마지~~않~~문을던져본다. 과연나는일등을하고싶은마음이있는가?

다음호에 계속

발 • 특2006.4



즐거운퍼즐

PUZZLE

함께 풀어봅시다

①	②		④		⑤	
	③					
⑧					⑥	⑦
⑨	⑩			鎡		
			鎡			
錯					鎡	
			鎡			

3월호즐거운퍼즐정답

출	아		연	대	조	증
	비	자	금		조	
음			술		개	탁
월	천	국		절		지
	부		단	구		대
목	인	석	심		장	신
	권		가	용	금	



즐거운퍼즐정답은다음호에게재하며,
정답자중3명을추첨하여
월간<발명특허>지1년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정답을적어
매월10일까지보내주시요.

즐거운퍼즐

가로열쇠

- 고을원이나감사·병사(兵使)·수사(水使) 등甞사를 처리하던대청이나집
- 네 개의삼각형으로돌려싸인입체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문화기관의한 가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바둑이나장기에서대국왜음단계
- 아내에게놀려지내는사람을조롱하말
- 굳건한뜻이있으면반드시이루어낸다
- 수정에서볼 수있듯이, 광물이그 속에포함하고있는 다른물질로인하여나타내는빛깔
- 고대중국의청동화폐의하나. 기원전 4-3세기경연나라에서유통하던, 작은칼처럼 생긴 화폐로明자 비슷한무늬가있음
- 장사하는사람. 장수

세로열쇠

- 저자·발행자가그책을남에게헌정(獻呈)하는취지를 쓴글
- 물리적으로공간의일부를점해 유형적으로존재하는 물건
- 보증인. 후원자. 상연(上演)송에서프로그램을제공하는 광고주
- 언행을이랬다저랬다하여그 마음을알 수 없는옹졸한사람
- 약혼만하고아직결혼하잖은아내가될여자
- 아버지가아들에게주는교훈
- 거짓으로일컫는성명
- 색상이다른두가지빛을합하여흑색또는회색의한 빛을이룰 때이 두 빛을 서로일컫는말. 곧빨강과초록, 주황과파랑등
- 종에대해, 그주인

발명칼럼

지식재산권의 힘은 막강하다

남호현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남호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회명합동법률사무소 파트너
 영국 런던의 <Euromoney Publications PLC> 선
 정한 1996년 세계의 지도적 상표법 전문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심의위원
 한국상표학회 회장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중전의 의장권) 등 지식재산권은 다국적 공룡 기업을 상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 물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 때 가능한 일이다.

콜리앗과 다윗의 싸움

콜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지켜보는 재미가 그만이다. 아니 다윗이 콜리앗을 쓰러뜨리는 광경을 구경할 수만 있다면 것처럼 통쾌한 일도 없으리라.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분쟁에서 난쟁이가 거인을 이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

연간 매출액 250억 원이 고작이던 그 당시 충남 천안의 대성금속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1999년 말 ‘777’이란 상표 출원 공고허가 통지를 받았다. 대성금속으로서는 매출액이 대성금속의 900배에 가까운 콜리앗 보잉사를 상대로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

이 두 배가 아니라 900배였다.

대성금속은 손톱깎이를 주력 상품으로 삼아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가 고유 브랜드 ‘777(스리세븐)’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지만 공룡 기업 보잉사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보잉이 1990년 미국 특허청에 똑같은 ‘777’ 상표를 등록했으므로 대성금속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콜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먼저 사

용만 해도 상표권을 인정하는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 대성금속은 대성금속이 미국에서 먼저 ‘777’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들어 보잉을 공격했다.

대성이 만든 ‘777’ 손톱깎이는 비록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보잉이 상표 등록을 하기 6년 전부터 미국에 수출했음을 주장했고 미국 특허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 중소기업에 KO패 당한 보잉사가 타협 요청

손톱깎이를 만드는 한국 중소기업을 우습게 알았다가 보잉은 대성금속이 휘두른 주먹한 방에 KO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거인 보잉은 항공기 안의 편의품에 ‘777’ 상표를 붙이려면 상표권자인 대성과 타협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국제적인 관심을 끈 이 상표 분쟁은 결국 양쪽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대성측은 미 보잉사와 777 상표를 공동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다만 대성의 경우 앞으로 777이란 상표 밑에 ‘대성’이라는 영문을 표기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해야 권리를 인정받는 선출원·선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돈 주고도 뺨 맞을 수 있다

각국 특허 독립 원칙이란 것이 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권리가 없고, 우리 역시 외국에서 특허 등록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아무리 국내

에 등록되었더라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도 한국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면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 기업 K스포츠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외국 상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른바 상표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평소 탐내던 티셔츠, 청바지 등 캐주얼의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K스포츠는 수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용권자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전에 다른 국내 업자 B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 K스포츠가 B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특허청에 이와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스포츠측은 그제야 번리사를 찾았다.

“우린 돈주고 뺨맞은 격입니다. 정당하게 로열티를 주고 상표를 도입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K스포츠가 외국 M그룹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허술한 라이선스 계약이 화근을 만들다
“말이 좋아 라이선스 계약이지 수입 대리점 수준의 약정에 불과합니다. 겨우 상품 배포권을 얻기 위해 거액의 로열티를 주었다니 한심스러운 일이군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K스포츠 책임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은 K스포츠도 잘못이지만, 유명 브랜드란 자부심만 갖고 한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표 제공자 M그룹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K스포츠가 상표권 도입

발명칼럼

의사가 있다면 국내에서 반드시 사전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표라도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표 전용(독점) 사용권 역시 우리 특허청에 등록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분쟁에 휘말린 K스포츠는 어쩔 수 없이 M그룹의 책임자를 국내로 불러들였다.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완벽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M측이 분쟁 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잘못 대처하다간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위험 부담도 없지 않았다.

정당한 상표 사용권이 송사에 휘말리다

나중에 B사의 상표 등록이 무효화되는 것은 별개 문제였다. 당장 사업에 지장이 많은 만큼 K스포츠는 우선 급한 대로 B사와 협상을 시도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국은 B사에게 급한 대로 로열티를 주고 통상(비독점) 사용권을 얻어야 했다.

땀땀하게 상표 사용권을 취득했으면서도 K스포츠는 송사에 휘말렸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신세가 됐다. 더구나 덤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으니 가슴 아픈 일이었다. 비록 M사가 실수를 저지르긴 했으나 B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내 소신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M사의 상표명은 하와이군도의 유명한 섬이다. 명백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설사 등록되었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검찰은 드디어 K스포츠의 손을 들어주었

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K스포츠와 M그룹이 분쟁에 휘말리면서 받은 타격은 엄청났다.

상표권의 막강한 힘도 무력해지던 날

프랑스 랑콤사는 향수를 시판할 목적으로 ‘TRESOR’라는 향수 브랜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에선 이 브랜드가 ○○화학의 상표 ‘TREASURE’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통지서를 보내왔다. 랑콤사는 도형을 추가한 디자인에 ‘LANCÔME TRESOR’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고 출원 등록 공고가 나가던 시기였다. ○○화학이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랑콤사는 이의 신청을 극복했고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상표 등록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침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 브랜드를 찢절매게 만든 국내 특허

하지만 랑콤사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주장하는 ○○화학과의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화학이 이 등록 상표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두 브랜드 모두 보물을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프랑스어 TRESOR는 ‘트레조르’로 발음되고, 영어 TREASURE는 ‘트레저’로 발음되며 그 형상도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대항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랑콤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제품의 판매 중단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등 사업상 위기에 처할 것이 뻔했다.

○○화학은 랑콤사의 한국 에이전시인 한국화장품이 ‘트레저’ 상표를 사용한 향수 홍

보용 광고지를 제시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자랑하던 랑콤사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국적 기업이 화해를 받아들인 이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였다. 나는 해외 출장중 묵던 호텔에서 양쪽 회사 책임자와 번갈아 통화하면서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 마침내 랑콤사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화학의 상표권을 취득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랑콤사로선 향수 수입도 못 하고 거액의 비용만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이처럼 상표권의 위력은 막강하다. 일단 먼저 등록만 했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랑콤사는 상표 이전, 등록으로 향수 판매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낭비하며 송사를 벌이긴 했지만, 화해를 주선하여 분쟁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에 보람을 느낀다.

꼬마의 주먹에 KO당한 미 보잉사

유명 상표는 설령 제삼자가 다른 품목에 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현의 상표 ‘마르조’를 제삼자가 가방, 핸드백 등에 사용할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소비자가 대현의 제품으로 오인하여 대현측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국내 문구 전문 업체 양지사와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웨어(MS)사가 맞붙은 상표 분쟁도 성격은 다르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1981년 양지사는 다이어리에서

창문처럼 목차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의미로 ‘Window’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1992년에는 등록 경신을 하고 Window라는 브랜드로 연간 20만 부의 다이어리를 제작, 판매해 왔다.

양지사의 제품을 목격한 MS가 상표 등록이 부당하다며 당시 특허청 심판소에 취소 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1996년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심판소는 ‘상표 사용 실적에 관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영문 상표와 한글 상표를 동시에 쓰지 않았다’며 양지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거인에게 승리한 한국의 상표권

양지사는 상표를 출원한 1980년에는 윈도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자기네 상표에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쓰지 않은 것은 디자인상의 문제라며 즉각 항고했다. 오히려 MS가 매뉴얼에 윈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양지사의 상표를 침해했으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MS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양지사가 선등록을 이유로 부당하게 세계적인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3년 한국 특허청에 컴퓨터 분야에만 출원한 게 사실이지만 매뉴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거인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와 난쟁이 양지사의 싸움은 한때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적도 있다.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인 ‘윈도’를 양지측이 도용했는지, 아니면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결국 7년 만에 양지사의 최종 승리로 매듭을 지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

발명칼럼

상표 분쟁 때문에 수출 포기

해외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그렇지만 자동차도 전 세계를 시장으로 판매하는 전략 상품이다. 하지만 자동차가 아무리 저렴하고 품질이 월등한 상품일지라도 해외 진출이 어려울 때가 있다. 고유 브랜드를 내세워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매 대상 국가에 일찌감치 등록된 상표 몇 가지 때문에 애를 먹기 때문이다.

수출 대상국 특허청에 이미 한국 자동차 메이커의 브랜드가 그 나라 업체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수출품을 선적하기도 전에 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적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기나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상표 싸움은 수출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수출 상담 전 상표 검색해야

중도에 주저앉은 이유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잃어서가 아니다.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서 그 나라에 반드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지 못한 탓이다. 수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상표 검색은 거쳐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다. 그보다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브랜드 관리를 모든 것에 앞세워야 한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지금도 우리 기업의 국제 감각은 미약하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국제 특허나 국제 상표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지만 특허 분쟁은 의외로 힘겨운 싸움이 되곤 한다.

상표가 곧 기업의 힘

유명 상표 나이키가 스페인에 진출할 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스페인 현지에 같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던 나이키는 불가피하게 자기 상표를 자기가 사들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물론이다.

지구촌이 한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상표가 곧 기업의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벌어지는 상표 전쟁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상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다.

홍콩에는 중국인이 차린 무역회사 삼성이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현지인이 세운 무역업체 쌍룡이 등장했다. 대만에 가면 현지산 하이트맥주를 마실 수 있고, 홍콩에선 국산으로 착각할 만한 신라면이 만들어져 팔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에서는 골드스타가 붙은 가전 제품이 수없이 눈에 띈다. 화승의 운동화 상표 르카프는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도용당하고 있다. 값싼 운동화에 르카프 상표를 붙인 채로 대량 유통되어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했다. 고려용접봉의 상표 코끼리는 태국과 파키스탄에서 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한국 상표를 후진국들이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자동차, 라면, 스타킹, 운동화, 인삼, 화장품, 주방 기구 심지어 손톱깎이 등 수많은 제품이가짜 한국 상표를 달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현지 기업들이 먼저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식재산권의 판단 수준은 그 나라에 있다.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다른 나라에선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다. 김

지식재산권의 힘은 막강하다

치를 만드는 재료의 배합 기술 등 김치 제조 관련 특허의 90퍼센트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김치 종주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무참히 빼앗긴 셈이다.

국제적 감각 없으면 자멸

이처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다가 분쟁 대응력이 초보적이고 보유 기술도 낮은 한국을 ‘봉’으로 여기는 외국인들이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특허 관리 전문 회사를 차려 지식재산권 정보에 어두운 나라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특허 관리 전문 회사는 소수인원으로 제조 설비 없이 오직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라이선스

수입을 올린다. 이들은 특허권을 매입한 뒤 어수룩한 기업에 경고장을 보내고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소송부터 벌인다.

외국인들의 지식재산권 공세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자. 경영 환경이 어려운 데다가 선진국의 특허 소송에 말려들면 하루아침에 사세는 기울고 말 것이다.

우직하고 성실한 기업이면 얼마든지 살아 남는다는 말은 옛말이다. 국제적인 감각이 없으면 노하우와 양심을 가슴에 품은 채 자멸해야 하는 세상이다. 최근 일본 대기업들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해 특허권 상표권 클레임을 무기 삼아 후발 국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발 • 특2006. 4

세상에 이런일이
발명 365

먹을 수 있는 종이

먹을 수 있는 종이가 개발되었다. 최근 일본의 한 기업 연구소가 개발한 이 종이는 콩을 가공할 때 생기는 비지와 간장 찌꺼기 등에서 섬유질만을 빼내서 만든 것이다.

이 식용종이는 맛, 냄새가 없으며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색깔도 변하지 않으며 녹는 종이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또한 영양가가 없어 비만증 환자나 여성들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주변이 건조할 때 수분을 분출하는 속성이 있어서 벽지로 사용할 경우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니 기적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제조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는 비지나 간장찌꺼기를 버리거나 가축사료로 사용하면서 생기던 비지의 악취나 오염, 폐지의 처리 문제가 식용종이의 실용화 덕분에 사라질 판…… 먹으면 되니까!<王>

특허길라잡이



이 두 성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과장

기술이전을 기다리는 우수한 특허기술이 한자리에

대 한민국특허기술이전박람회(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서울삼성동코엑스인도양관에
서개최된다. 국내 대학·연구기관에서 특허기술 및 국가가 보유하는 국유특허 등의 민간이전 목적
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공공기술 16개, 일반
기술 40개 등 총 156개의 우수한 특허기술이 한자리에 전시된다.

<표1> 출품기술 선정자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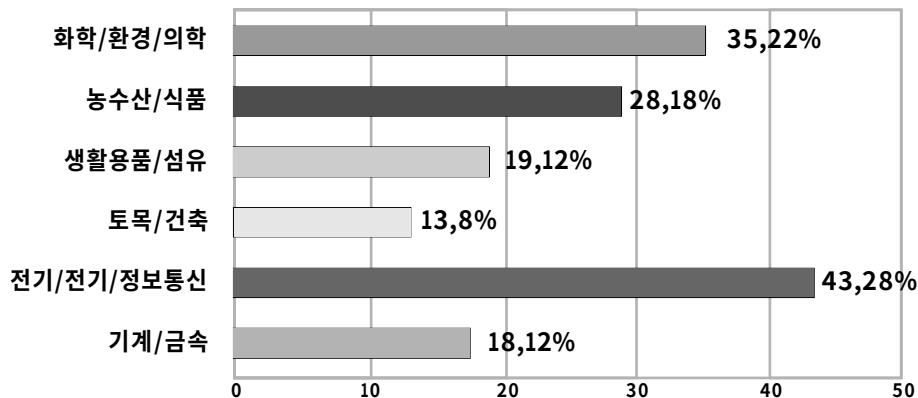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정부연구기관	기 업	개 인	계
출품기술	65	51	23	17	156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기술이전 기능이 어려웠던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중소기업, 개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이전 마케팅의 기회를 갖게 된다. 특별히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특허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특허진흥원, 한국특허진흥원 내 유수의 기술거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박람회장을 소내에 기술이전 지원하듯 특허기술 지원관을 설치하고, 자금, 기술정보, 기술평가, 경영지원 등 다양한 이전 컨설팅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기/전자/정보통신 48개로 전체 기술 중 약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화학/환경/의학, △농수산/식품 분야를 비롯하여,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전기전자·정보통신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기술이전을 기다리는 우수한 특허기술이 한자리에

<그림1> 기술분야별 현황



금번박람회는관람객들의편의를위해분야별전시관으로구성되는데, 전시관규모및 운영내용은 아래와같다.

<표2> 테마전시관별 규모 및 내용

전 시 관	규 모	내 용
특허기술 이전관	100부스	○ 공공기술 이전관 : 국유특허, 연구소, 대학 보유 기술 ○ 일반기술 이전관 : 기업, 개인 보유 특허기술
우수발명시작품관	30부스	○ '05년도 우수발명시작품제작 지원기술 중 전시희망 우수발명특허제품의 전시 및 홍보 공간
특허기술 지원관	10부스	○ 국내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 관련 각종 지원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
특허기술 소개마당 (Patent Tech Plaza)	-	○ 기술거래 희망기업 및 개인은 누구든지 기술내용을 벽보·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
무료유통 상담코너	10부스	○ 유통상담관,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상주시켜 상담할 수 있도록 배치 - 특허출원 및 등록관련 전반적 상담 - 특허기술거래·평가관련 상담 - 사업화지원제도 상담 - 기술관련 자금상담 등

한국발명진흥회이번기술이전박람회를통해우수한기술이전의장을마련함으로써상대적으로기술개발이어려운중소기업자, 창업자에게사업화의기회를부여하고, 마찬가지로사업화차려운공공기관및 개인발명가에게기술판매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모든기술보유자및 수요자가서로의 부족한부문을나누는상생의 자리를마련하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장윤중팀장은금번출품기술은엄격한심사를거쳐선정된우수한특허기술인만큼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서기술이전이될수록지원할예정이라고말하고특별히기술수요자의높은관심을당부했다.

지난2003년도부터시작된특허기술이전박람회는작년까지약700 여개의우수특허기술을소개했으며, 약1,700건의기술이전상담및 32건의기술이전실적을이루었다.

다음호에 계속

발 • 특2006. 4

세계는지금

물건 ‘속’ 사정을 꿰뚫다



유지영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1995년 6월부터 과학신문기자로 활동
2000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로상 수상
각종 매체에 과학관련 원고 다수 연재

진보하는 비파괴검사 기술

봄, 바야흐로사랑의계절이다.

젊은 처자의마음은봄바람에날리는치맛자락마냥
하늘하늘흔들린다. 청년모별다를까. 겨울내팔답한코트에
간혀있던여심이알록달록단장을하고거리를나섰으니, 청
년의마음또한뒤숭숭하게마련. 곧사랑의시작인셈이다.

하지만어디연애가달콤하기만하던가? 짝사랑이라할
라치면, 상대의속내를몰라가슴앓이가보통이아니다. 서로
의마음을확인하고연애에빠져든커플도마찬가지다. 상대
방이무슨생각을하고, 무슨행동을하는지속속들알고싶
은게사람의본성아닌가.

“저남자가무슨생각을하는지좀알았으면좋겠어…….”

“대체저여자는무슨생각으로저렇게말하는거야?”

만나면만날수록의문은늘어가고, 자칫잘못하면돌이킬
수없는오해로이별을선언하기도한다.

오죽하면상대방의마음을읽는비결을담은심리학서가
서점가의스테디셀러가됐을까?

그러나아무리훌륭한심리학자라할지라도사람의마음을
온전히읽는것은불가능하다.

도를터득해 ‘관심법(觀心法)’로남의마음을들여다봤
다는궁예마저도결국민었던동지에게배신당해비참한최
후를맞지않았던가.

역시숨겨진속을들여다본다는것은어렵고지난한일이
다. 또그렇게어렵고힘든일이기에도전해볼가치있는것

인지도모른다.

속을 들여다보고자하는 욕망은 비단 연인들의 바람이나 심리학자들의 연구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접근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지만, 세상만물은 모두 겉과 속이 있고 안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만물의 안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하면 겉을 파괴하지 않고 속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달콤한 사과를 고르기 위해 선택한 입 깨물어먹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마트 진열대에 가득 쌓인 사과를 일일이 먹어볼 수 없는 노릇이다. 커다란 공기 내부에 갇힌 작은 균열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체를 토막낼 만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 강대교를 정밀 검사하겠다고, 여기저기 다란 구멍을 뚫었다가 뇌고랑을 찌른 가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이 문제들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니, 여기서부터 과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겉을 부수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 즉 비파괴 검사법이리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고만 끝에 만들어진 기술이다.

비파괴 검사는 재료나 구조물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 뚫찰에 균열이나 손상 등이 발생하면 물리적인 성질이 변화하는데, 이것을 음향이나 전자기, 광, 방사선 등을 이용해 탐지하고 이를 해석해 내부의 변화를 추정해낸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최근 검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기술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근래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기법도 각광을 받고 있다.

레이저로 과일 맛까지 측정

레이저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기술은 일당도 측정부터 혈액 검사까지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2005년 여름, 미국 농업 연구소는 레이저를 이용한 과일 당도 측정 기술을 개발 발표했다. 지금까지 과일 당도 측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느다란 탐침을 과일에 찔러 넣는 것이었다. 측정된 값이 정확하고, 검사법이 간단하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행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검사법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문재산을 받은 과일은 상품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바늘로 찔러 흠집을 내어버리기 때문에 시장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몇 개의 과일만 샘플로 검사하기 때문에, 과일 품질을 100% 보장할 수 없다 문 제도 있다.

미 농업 연구소의 Renfu Lu 박사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를 활용했다. 특정한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과일의 당도에 따라 각각 다른 산란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과일의 맛을 수치로 확인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

세계는 지금

사과·복숭아 등의 과일에 실험한 결과, 레이저 입사 흔적이 전혀 남지 않고 정확한 당도 측정 결과를 얻어냈다.

이 방법이 상용화되면, 과일 메이저 빔 기계를 통과하면서 열로 당도 및 품질 검사가 이루어져 등급에 맞게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아직은 1초 당 2개의 과일을 처리하는 수준이지만,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시켜 대량 처리 설비를 제작해 상품화될 전망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은 의료 현장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화학과의 Joseph Chaiken 교수는 지난해 10월 레이저를 이용한 무통혈당 측정 기술인 'LighTouch'를 개발 발표했다.

이 기술은 모세관의 혈액에 레이저를 쏘아 혈액의 분광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포도당 요소 및 단백질 총량 등 혈액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손가락 끝의 혈액 색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존 당뇨 검사와 달리 손끝을 찌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한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개발해 상용화해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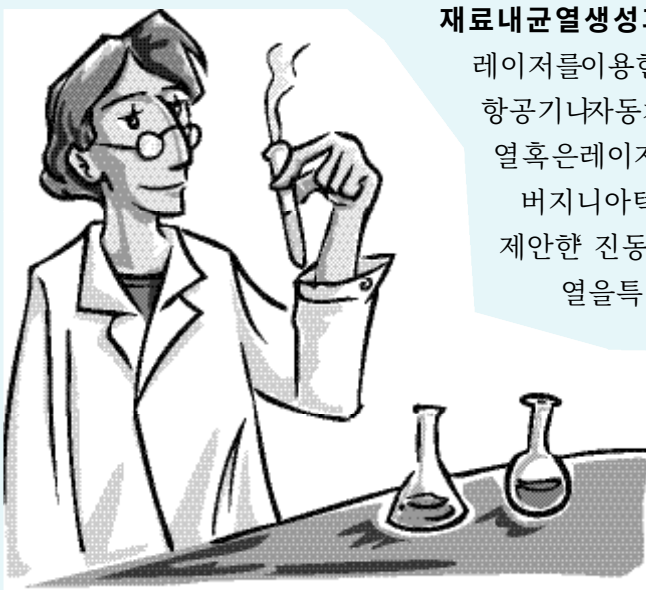
또 레이저를 이용해 안구에 특정한 단백질을 측정함으로써, 알츠하이머를 조기 검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버드의과대 연구팀이 연구 중인 이 기술은 앞으로 광우병과 같은 프리온 병과 아밀로이드 전염병 탐지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료 내 균열 생성 과정도 확인

레이저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이 주로 생물에 적용된다면,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거대한 물체를 검사하는데에는 진동 열 혹은 레이저 초음파 기술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버지니아텍공과대학의 Ed Henneke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진동 열기법(vibrothermography)은 재료의 진동 열을 특정함으로써 내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복합 물질 코어 루어 재료에 기계적 진동을 가하면 진동 열에 의해 재료 표면에 일정한 온도 패턴이 나타나는데, 연구팀은 재료 내부에 손상이 있는 경우 표면에 열



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재료 표면 열 패턴 등고선이 나타나며, 이를 해석하는 경우 재료 내부의 균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재료 내부의 균열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물체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항공기 동체 형기계의 경우엔 이런 작은 결함조차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군 재료 연구소는 지난해 8월 항공기의 주요 부품에 발생하는 피로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저 초음파 검사법을 개발한 길을 끝냈다.

이 방법은 물체의 표면을 이동하는 음파(acoustic wave)를 섭계를 이용해 촬영하는 기법으로, 부식으로 인한 피로 균열이 전개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균열의 확장 범위, 성장률, 균열의 깊이까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현재의 내부에 약화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어떻게 균열로 이어지며 그 전개 방식까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날로 발전하는 비파괴 검사 기술의 덕으로 인간의 눈이 미치는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과일 속 사정까지 한 눈에 꿰뚫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인간 사속 사정을 알아보는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워터맨의
펜촉」

7.14.1 2차원 배열

저서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냥하는
있는 동물 (물고기, 새, 짐승 등)
사냥감



보혈지원은 석 잔나까지 하면 율리우스의
보혈에 약실처럼 고착하는 한 달에 강박관념이 없다.



1304 * 31 444 2.2



형제 사물되어지고 있는 데를 ()
보통사람의 말만 영접하려고 근위하면
내부의 '죽어있는 마음'이 드러나왔다



그런데 고령에 사는 고령의
사람들이 한결 이쁘게는 살아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사민한대로 살아가고...



이로써 계약자는 불길한
경조리며 모든 계약에 관한
사실을 추궁하고 돌아야 버렸다.



당시에도 편곡에 구멍이 있어
링크가 잘 끊려 내리곤 했었다



예쁜 이 일로 화가 탄탄히 난
유근명은 호사까지 그만두고 새로운
평생을 망설임에 전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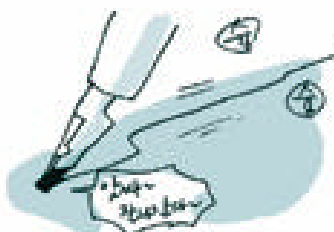
수많은 편지를 사다가 쌓았으로 가짜
글을 이용하여 새로운 편지 만들기를 한달째.
어느날 그는 편지 가둠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아래 복판을 예리하게 잘라 새로운 편지를
작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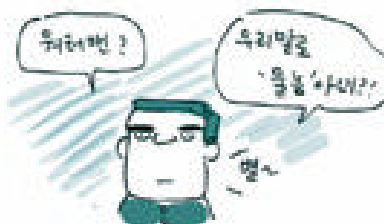
위러만은 큰서 독히 충성을 했고,
판관에 나서는 날이돌친듯 팔려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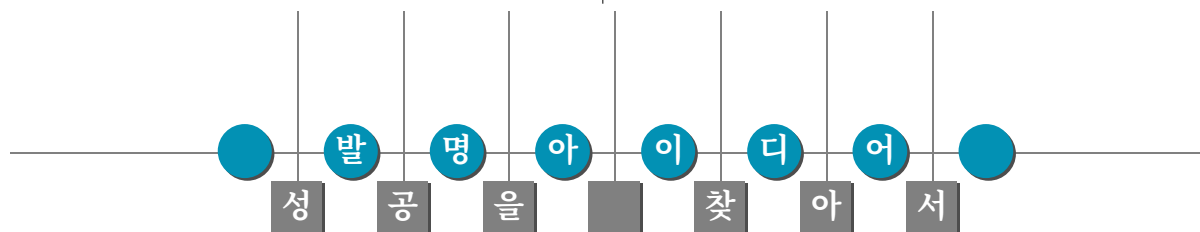


이 새로운 편찬은 글씨가 잘
새질수록 아니라, 임의로 수필에
맞추어진 것이다.



떡화기업은 취타장에게 로열티를 주고 폐업을 판매했고, 그는 연간 10만달러씩 벌어들였다. 이후 김해 취타장은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그의 이름까지도 만원하마미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신선한 생각을 보관하라

식 품 영양 학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식품은 신선한 식품이라고 조언한다.

제철에 갓 딴 과일이 제일 맛

있고 영양가 있다. 채소도 밭에서 막 가져온 싱싱한 것을 먹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식품은 시들해지고 갓가지 병균이 생겨난다. 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많이 파괴된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면 퇴색하고 처음의 생생한 생동감이 떨어진다. 점차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아이디어와 함께 떠올랐던 갓가지 생각들은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나중에는 화석처럼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는데, 이때는 이미 가치를 잃은 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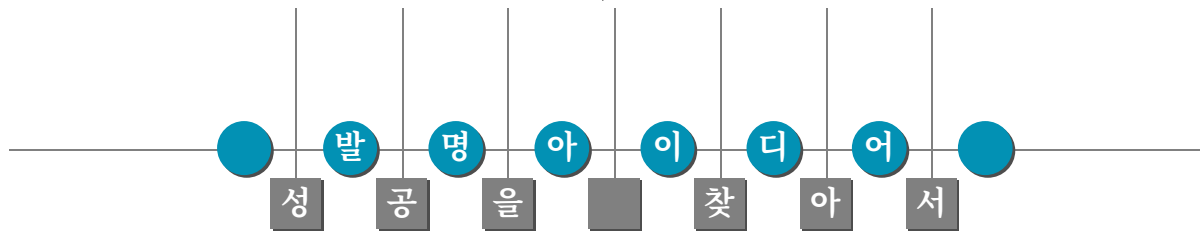


간신히 아이디어의 뼈대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생각을 잃으면 그만큼 가치도 떨어진다. 갓 잡은 생선이 가장

비싼 것처럼 아이디어도 갓 잡은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신선한 생각을 잡아둘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채소나 고기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자마자 신선한 냉장고에 보관하듯이, 생각도 건지자마자 바로 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는 것이다.

에디슨이 최고의 발명가로 올라선 비결도 바로 그가 애지중지하게 여긴 발명노트에 있다고 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엄청난 기록광이었다고 증언한다. 함께 식



사를 할 때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적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작은 수첩을 분신처럼 늘 가지고 다녔고, 메모지가 없을 때는 식당 냅킨이나 휴지조각에도 생각을 그때그때 옮겨 적었다. 덕분에 그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괴짜'로 취급당하기도 했다.

그의 사후에 유물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책장 빼곡이 꽂혀있는 발명노트를 보고 모두 놀랐다고 한다. 노트 안에는 여러가지 발명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 작은 메모지들이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그가 평소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메모한 종이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노트에 붙여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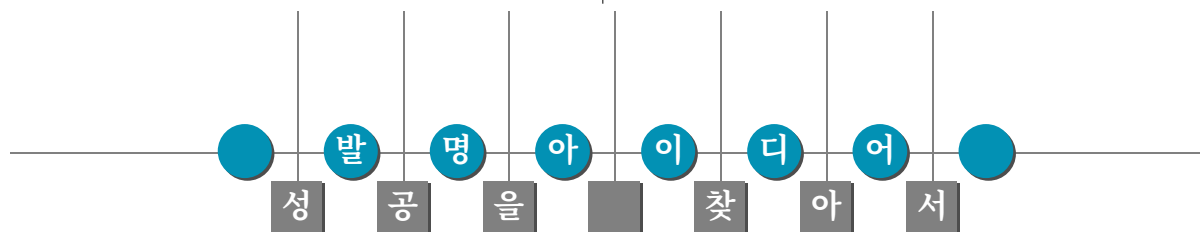
또 아이디어 뿐 아니라, 연구의 진행사항도 일일이 기록해두었다. 실패한 연구 사례

도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적고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중에 다시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온 것이 분명하다. 그야말로 완벽한 발명 교과서라는게 발명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좀 있다가 집에 가서 찬찬히 다시 생각해야지' 하면서 머리 속에 다짐해둔다. 잊지 않겠다고 되새긴다. 하지만 생각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일단 떠오른 이후에는 급격하게 부패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떠오른 당시에는 펄떡펄떡 살아 숨쉬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와 흥분에 떨기 시작하지만, 불과 10분이 못되어 서서히 감흥은 잊혀지고 점점 생명력이 떨어진다.

이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도 생생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장소나 시간을 가리



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영영 남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때그때 기록해두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소용이 닿는다. 생각의 창고를 만들어두는 셈이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유명한 3M사의 경우, 사원들에게 1인당 한 권의 아이디어 공책을 가지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도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버리지 말고, 아이디어 공책에 기록했다가 회의시간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 3M은 이 아이디어를 꼼꼼히 검토하고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3M만의 다양한 상품이 모두 이 아이디어 공책에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 회사의 경쟁력이 직원 공책의 더럽거기에 비례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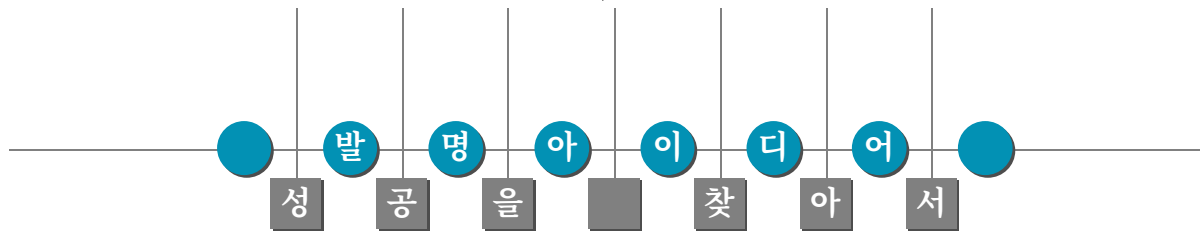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유명한 발명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맡에 늘 작은 수첩과 볼펜을 챙겨둔다고 한다. 꿈에서 얻은 아이디어조차도 기록하겠다는 심산이다.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본 것들을 적는다니 발명가들의 기록습관은 도저히 못 말릴 정도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는가? 그가 남긴 수많은 발명메모를 통해서이다. 천재성이 번뜩이는 그림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그의 발명노트는 많은 발명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를 털끝까지 세세히 남길 수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그저 메모지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소형 녹음기에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무선 전송기 등등 너무나 많은 기기들이 있다.

일일이 글자로 남기는 것이 어렵다면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글은 생각을 남기는 도중에 어휘의 한계 때문에 그 내용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 본래 생각과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떠오른 생각을 바로바로 말로 읊어 둔다면 한가지도 잃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 특히 녹음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록이 가능하므로 아주 쓸모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최고경영자)들이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을 가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칫 빠트릴 수 있는 안전을 재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치밀함이 성공의 비결일 것이다.

인기 가수인 신 모씨도 운전 중에 떠오른 악상을 그대로 녹음기에 흥얼거려 뒀다가 작곡에 활용한다고 한다. 갑자기 떠오른 악상은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녹음해둔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오랫동안 좋은 가수이자 작곡가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록하는 습관 때문이지 않을까.

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형상이나 현상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색을 표현하는 것도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때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가방 안에 늘 작은 카메라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패턴을 보면 습관적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에는 작고 가벼운 디지털 카메라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그때그때 영상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둔다면 언제든지 생생한 사진 자료를 볼 수 있다.

컴퓨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컴퓨터는 종이와 달리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글자가 퇴색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정도를 잘 정리해두면 언제든지 원하는 재료를 몇 개의 단추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아주 요긴하다.

그러나 이런 첨단기기가 없더라도 작은 수첩과 볼펜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사진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스케치도 하고, 아이디어의 꼬나풀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 몇 개라도 적어둔다면 그것으로 좋다. 그것만으로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아이디어를 다시 잡아올 수 있을테니 말이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메모를 다시 정리해두는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록하는 것만 중요시 여긴다면 말짱 헛일이다. 수첩을 다시 뒤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물론 작은 종이 쪽지 등에 급하게 남긴 메모는 다시 공책에 옮겨 분실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은 수첩과 필기도구를 늘 지니고 다니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자. 모든 기록은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잡아두자. 예로부터 유능한 사냥꾼은 짐승을 다치지 않고 사로잡는 것을 제일로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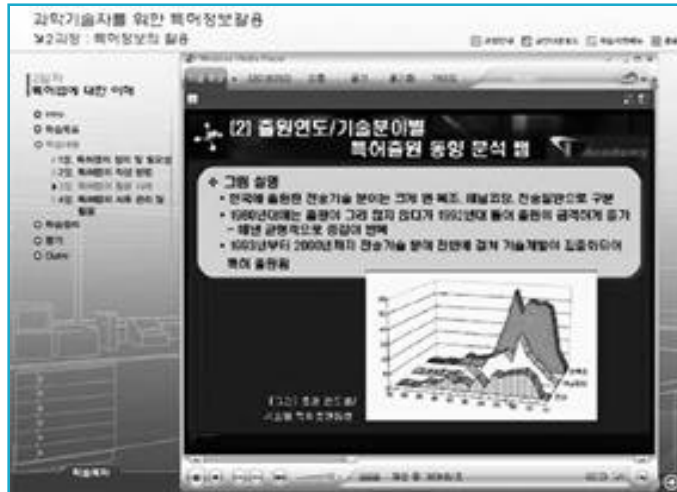
아이디어 사냥꾼임을 자처한다면 내가 잡은 아이디어가 상하지 않게 바로 생포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
왕연중記

발 • 특2006. 4

연재: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과정

특허정보의 활용 - 특허정보의 활용



강 사	이철희 변리사 외 2명
학습분량	총 7일차
수료기준	70점
평가기준	학습진도 100

钦 강사소개

- 정보통신부한미통상협상(통신분야) 자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고문변리사
- 한국과학문화재단산하한국사이버과학 연구소고문변리사
- 특허관리사자격시험출제위원
- 사단법인Korea CEO Network 이사

[과정소개]

1과정 “특허정보의 가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특허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대상]

-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인력 및 특허정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습목표]

-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특허맵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하고, 종류별 작성법과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각국의 특허정보DB를 활용하여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것의 일환으로 특허맵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 각국의 특허DB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활용하여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요령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학습목차]

- 1일차. 특허정보 활용방법 및 의미
- 2일차.특허맵에 대한 이해
- 3일차.특허정보조사방법개론
- 4일차.한국의 특허정보조사방법
- 5일차.미국의 특허정보조사방법
- 6일차.일본의 특허정보조사방법
- 7일차.유럽의 특허정보조사방법

특허넷 전자출원 실습 - 전자출원 일반편



강 사	신용주 사무관
학습분량	총 7일차
수료기준	70점
평가기준	학습진도 100

강사소개

- 특허청정보기획본부정보개발과전산
사무관
- 특허넷 II 팀(TFT) 팀장

[과정소개]

특허/상표/디자인의 전자출원에 필요한 여러 단계별 요소들을 따라하기 형태의 플래시로 개발하여 캐릭터가 안내하는 대로 클릭해가면서 정해진 절차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습대상]

- 전자출원에 관심있는 기업체 특허담당자 및 일반인

[학습목표]

- 전자출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자출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다.
- 전자출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권리별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 전자출원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각 절차별, 권리별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학습목차]

- 1일차.전자출원 서비스 개요
- 2일차.전자문서 작성기 사용법
- 3일차.특허출원서 제출
- 4일차.상표출원서 제출
- 5일차.디자인출원서 제출
- 6일차.서지사항 보정서 제출
- 7일차.명세서등보정서 제출

www.ipacademy.net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권에대한 인식제고및국제화시대에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포탈사이트인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발명지도교사, 전문가, 자격증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 여개의 콘텐츠를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 3459-2771~5 (한국발명진흥회인력개발팀)

월간「발명특허」광고게재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가격개월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 격	비 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mail : eldaah7@hanmail.net

광고및 원고모집문의: 한국발명진흥회혁신기획팀TEL (02)3459-2728

우리 화지 회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김창욱	김주병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문현회관 1층	051-645-9683
광주지회	이승기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3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400 한국과학기술원 동문 창업관 2층	042-864-4307
강원지회	박진서	허동욱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번지 벤처비즈니스살롱 1층	033-258-6580

편집: 혁신기획팀김민국(Tel. 02-3459-2728, Fax. 02-3459-2729)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의 중심

univ.ipacademy.net

온라인 교과정 운영지원 및 커리큘럼 제언, 오프라인 특강 지원

■ 강의 개설 및 학술교류협정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인력개발팀 02) 3459-2761, 2765, 2772



대학 교육지원 교과정

지식재산권기초
특허정보의 활용
특허명세서작성
특허관리/분쟁/해석
특허출원실무
법개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재미있게 멀티미디어 발명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www.ipacademy.net 에 방문해 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For happiness

